

감 사 보 고 서

-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

2024. 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2
III. 분야별 감사결과	5
1. 팩트체크 사업 관련	5
2. 기관운영 관련	77
[별 표]	89
IV. 개별처분요구사항	96

범례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 기관명 >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
- 사단법인 개개: 개개
- 사단법인 개내: 개내
- 사단법인 개다: 개다
- 사회적협동조합 개라: 개라
- 재단법인 개마: (재)개마

< 법규명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 용어 >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팩트체크 사업
- 수행기관: 보조사업자
- 위탁사업 수행기관: 간접보조사업자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¹⁾하였고,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재단의 주요사업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3년 방통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이후 재단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조직·인사·복리후생 등 기관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편향성 지적²⁾이 있었고 2023년 8월 감사 실시일 현재 간접보조사업자[(재)☐☐]의 해산³⁾으로 사업 일부⁴⁾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팩트체크 사업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실시에 앞서 재단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국회 논의사항,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1) 직전 감사 2020년 6월

2)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10. 8.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팩트체크 플랫폼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처리를 요구하였고, 2021. 10. 21. 국정감사에서는 재단에 '공공 팩트체크 사업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음

3) 2023. 1월 (재)☐☐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의결, 같은 해 2. 2. 법원에 법인 해산 등기, 같은 해 2. 15. 방통위에 법인 해산 신고

4)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내역사업)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내내역사업, 3억 원)

이후 사전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예비조사(2023. 8. 28.~9. 8., 총 10일)를 거쳐 2023. 9. 1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총 44일 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재단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24. 1. 1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⁵⁾

1. 설립 목적

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해 설립(2015. 5. 15.)된 공공기관으로,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방송 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지원, 각종 방송제작설비의 이용 지원, 방송광고 및 방송시장 모니터링 지원 등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혁은 [표 1]과 같다.

[표 1] 재단 연혁

일 자	내 용
2014년 5월	· 「방송법」 개정으로 재단 설립 근거 마련
2015년 5월	· 방통위, 법인설립 허가 및 재단 출범
2016년 2월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2023년 1월	· 공공기관 유형 변경(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5)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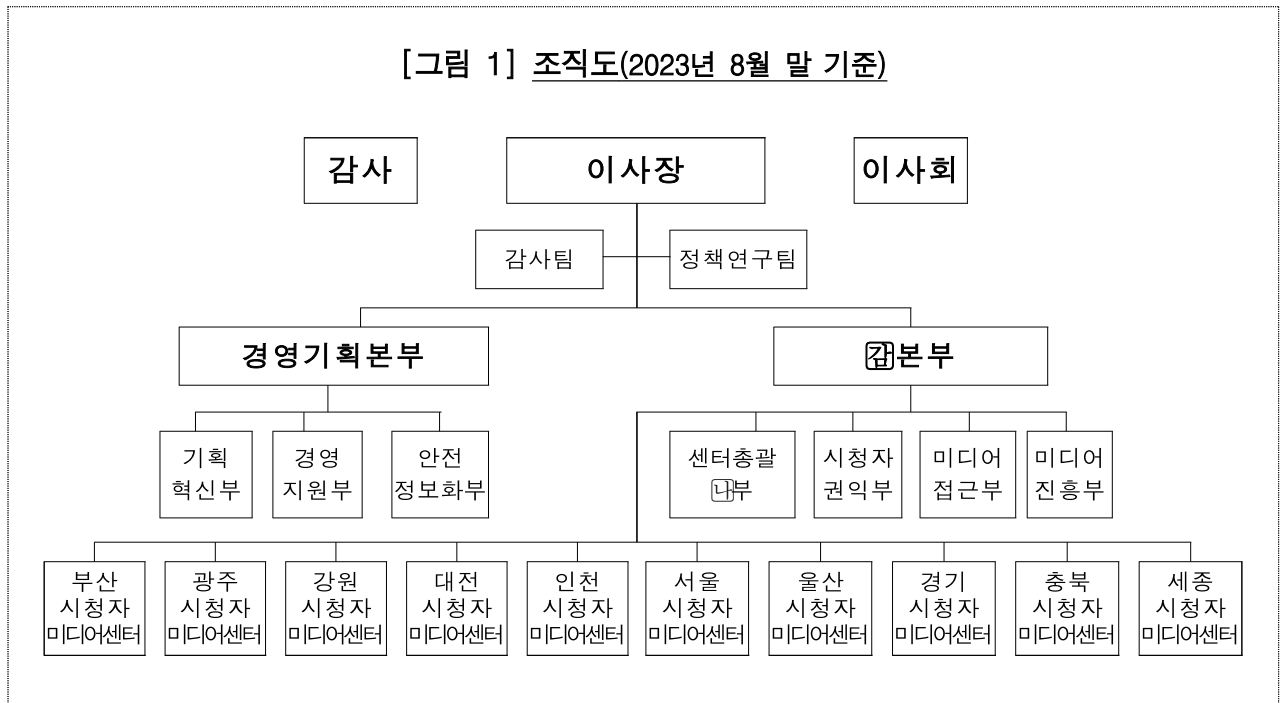
2. 조직 현황

재단은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6인 및 비상임감사 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표 2] 및 [그림 1]과 같이 하부 조직으로 2본부 7부 2팀 10센터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2023년 8월 말 기준 279명이다.

[표 2] 정원 및 현원(2023년 8월 말 기준)

구분	계	임원(상임)	일반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정원	279	1	189	89	-
현원	262	1	154	81	26

자료: 재단 제출자료



3. 예산 현황

재단의 2023년 예산규모는 [표 3]과 같이 수입 및 지출이 535억 원으로 수입은 정부보조금 434억여 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43억여 원 등이며, 지출은 인건비 147억여 원, 사업비 320억여 원, 경비 67억여 원 등이다.

[표 3]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수입	정부보조금	35,156	35,894	42,923	43,411
	지자체 부담금	3,594	4,030	4,125	4,397
	기타협약사업	1,312	1,718	1,390	827
	기부금 등	235	216	137	36
	전기 이월	2,842	286	1,764	4,829
	계	43,139	42,144	50,339	53,500
지출	인건비	12,452	13,526	14,184	14,773
	운영경비	5,509	6,159	6,415	6,711
	사업비	25,178	22,459	29,740	32,016
	계	43,139	42,144	50,339	53,500

자료: 재단 제출자료

4. 주요사업 현황

재단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표 4]와 같이 팩트체크 사업(연번 5번)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1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19,812	18,136	25,568	25,284	88,800
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0,262	10,262	11,084	13,434	45,042
3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1,688	1,705	1,708	1,743	6,844
4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520	1,520	1,368	1,368	5,776
5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560	2,740	1,740	610	5,650
6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489	492	432	439	1,852
7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300	500	500	2번 사업 으로 통합	1,300
8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21	235	219	229	904
9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0	200	200	200	800
10	재난방송 운영지원	104	104	104	104	416

주: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일반회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전액 지원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Ⅲ. 분야별 감사결과

1 팩트체크 사업 관련

팩트체크 사업 현황

팩트체크 사업은 보조금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목적 및 예산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목적 및 내용⁶⁾

방통위는 20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팩트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팩트체크 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 내용 】

-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국민참여형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알고리즘) 등을 개발
-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예비 팩트체커가 전문 팩트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를 매칭하여 멘토링을 제공하고, 팩트체크 실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을 지원
- (팩트체크 인력양성) 팩트체크 관련 공모전 개최 지원 및 팩트체크 이론·실무교육프로그램 제공
-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역량 강화를 위해 팩트체크 교육 지원 및 국내외 팩트체크 조사 분석 등

나. 사업 추진 방식

방통위는 2020. 2. 21. 재단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방송

6) 방통위의 2020. 1. 13. '2020년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등 참조

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같은 해 3. 6. 재단에 보조금(610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를 한 이래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은 2020. 4. 28. [가]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간경상보조금, 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⁷⁾ [표 5]와 같이 팩트체크 사업 일부[2020년~2022년 예산 총 5,040백만 원 중 1,854백만 원(37%)]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간접보조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 현황

연도	위탁사업명	간접보조사업자	예산
2020	팩트체크 위탁사업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가] ([가], [가], [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264백만 원
2021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가] → (재)[가]	200백만 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가]	300백만 원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재)[가]	220백만 원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재)[가]	50백만 원
	팩트체크 사례 분석 및 연구	(재)[가]	70백만 원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가]	100백만 원
	2021년 2학기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가] 등 2개교 산학협력단	12백만 원
	계	-	952백만 원
2022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재)[가]	480백만 원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재)[가]	84백만 원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	(재)[가]	50백만 원
	2022년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가] 등 4개교 산학협력단	24백만 원
	계	-	638백만 원
합 계		-	1,854백만 원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7) 2023년 2월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가]가 해산하였음

다. 예산 현황 및 사업 실적⁸⁾

팩트체크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예산은 총 5,650백만 원('20년 560백만 원, '21년 2,740백만 원, '22년 1,740백만 원, '23년 610백만 원)으로 내역 사업별 상세 예산은 [별표 1] “팩트체크 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같다.

한편, 팩트체크 플랫폼⁹⁾은 2020. 11. 12.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54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팩트체크 결과물 총 348건이 생산되었다. 팩트체크 관련 교육은 팩트체커 양성 교육이 총 38회(총 500명 이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총 164회(총 2,959명 이수)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팩트체크 사업을 통해 기타 이러닝 콘텐츠 운영, 대학 내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교육 콘텐츠 제작, 연구보고서 발행, 광고 등 홍보 활동 등이 수행되었다.

라. 사업 추진 연혁

1) 2020년 이후 보조사업자 등 선정

방통위는 2020. 1. 13.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같은 해 2. 20.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 21. 재단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3. 30. 등¹⁰⁾ 2020년 팩트체크 사업 일부에 대한 간접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같은 해 4. 28. 를 선정하는 등 2022년까지 [표 5] 및 [별표 1] “팩트체크 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같이 사업 일부를 간접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8)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보조사업 완료 후 재단이 방통위에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9) 인터넷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그룹이 협업하여 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플랫폼

10) 2020. 3. 30. 위탁사업 공모를 하였으나 1개 기관만 신청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에 따라 같은 해 4. 8. 재공고하였음

2)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등 이전

방통위는 2020. 1. 13.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에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재단은 같은 해 4. 28. [가]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재단은 법률검토 및 방통위 보고 등을 거쳐 같은 해 9. 15.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위탁사업 협약을 변경하였다.

3) 2021년 간접보조사업자 변경[가]→(재)가 등]

방통위는 2021. 1. 14. 재단으로부터 [가]를 2021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500백만 원)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사업수행계획서¹¹⁾를 제출받아 같은 날 이를 승인(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 29. [가] 컨소시엄 구성원 4개 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가 설립을 허가하였다.

그 후 방통위는 같은 해 2. 17. 재단의 위 사업 수행주체 변경[운영 및 유지보수: 가→(재)가, 기능 고도화: 가→가] 요청을 승인하여 팩트체크 사업의 수행주체를 [가]에서 (재)가 등으로 변경하였다.

4) 2023년 일부 보조사업의 중단

재단은 팩트체크 사업으로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 2021년 모바일 앱 등을 개발¹²⁾하였는데,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은 2020. 9. 18. [가]¹³⁾에 귀속되었

11)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2020년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0년 위탁기관인 [가]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2) 2020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사업비 1억 원, 간접보조사업자: [가]),

다가 2021. 2. 17. (재)KPM로 이관¹⁴⁾되었고, 팩트체크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은 2021. 5. 24. (재)KPM에 귀속됨¹⁵⁾으로써 (재)KPM가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2023. 2. 2. (재)KPM가 국회의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법인을 해산¹⁶⁾함에 따라 같은 해 2. 28. (재)KPM가 소유하고 있던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등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방통위 및 재단은 같은 해 12월 현재까지 관련 팩트체크 사업¹⁷⁾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제 점

가. 보조사업자 등 선정 분야

1-가-1)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부당 지정

1. 사건 개요

재단은 2021. 1. 14. 방통위에 ‘KPM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500백만 원) 사업 수행주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20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위탁사업(사업비 1억 원, 간접보조사업자: KPM)

13) 2020. 9. 18. 재단과 KPM 간 체결한 ‘2020 팩트체크 위탁 사업 변경 협약서’

14) 2021. 2. 10. KPM가 팩트체크 사업 관련 자산 등 일체를 (재)KPM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같은 해 2. 17. 승인

15) 2021. 5. 24. 재단과 (재)KPM 간 체결한 ‘2021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2차 위탁사업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협약서’

16) 2023. 1월 (재)KPM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 의결, 같은 해 2. 2. 법원에 법인 해산 등기, 같은 해 2. 15. 방통위에 법인 해산 신고

17)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내역사업)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내내역사업, 3억 원)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2. 5. 위 사업을 세분하여 ㉠㉠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각각에 대하여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같은 해 2. 17. 방통위로부터 사후에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 변경[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승인을 받았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3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수행계획서, 보조금 교부 조건, 협약서 등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통위의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등 「2021년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021. 1. 14.)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가 시공,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¹⁸⁾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일반경쟁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¹⁹⁾을 할 수 있

1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은 2020년도에 ‘팩트체크 관련 교육 및 사업 실적이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으로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모를 통해 [가]를 팩트체크 사업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2021년도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공모를 하지 않고 [가]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통위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재단은 2021년도에 [가]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가]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 중 기능 고도화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여야 하며, 위 사업을 분리하여 그 중 일부 사업에 대해 [가]가 아닌 제3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재단이 방통위 승인 없이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 변경

재단은 2020. 4. 28. [가]를 「2020년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사업²⁰⁾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방통위에 보고한 후 같은 해 9. 18. 협약을 변경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켰다.

1항 제5호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 등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 [가]는 2020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사업의 주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가], [가], [가], [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그 후 재단은 2021. 1. 14. 방통위에 ‘2000년도 사업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500백만 원) 사업 수행주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한편, ㉠㉠ 대표 I는 2020. 12. 31. 방통위에 ㉠㉠ 컨소시엄 구성원 4개 단체가 맡기인으로 참여하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21. 1. 26.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같은 해 1. 29. ㉠㉠로부터 ㉠㉠가 2020년도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2021년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재단이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수행주체가 ㉠㉠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단은 방통위의 사업수행주체 변경 승인 없이는 ㉠㉠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사업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부문을 다른 단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관계규정 등에 따라 ㉠㉠로 하여금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거나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 ㉠팀 팀장 F는 같은 해 2. 1. 같은 팀 선임 J²¹⁾가 ㉠㉠ 및 ㉠

㉔에 각각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200백만 원) 및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300백만 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수행주체가 ㉔에서 ㉔로 변경된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자, ㉔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통해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도록 하지도 않고 방통위에 사업수행주체 변경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전결)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2. 5. ㉔ 및 ㉔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200백만 원) 및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300백만 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한 것에 대해 J가 같은 해 2. 6. 위 2개 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교부결정 계획을 기안하자, 그대로 중간결재한 후 ㉔본부장 K²²⁾와 이사장 L²³⁾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재단은 같은 해 2. 9. ㉔에게 1차 간접보조금 120백만 원을 교부²⁴⁾하였다.

또한 F는 같은 해 2. 10. ㉔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제외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인력·예산·자산을 (재)㉔에 이관²⁵⁾하는 데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J가 같은 해 2. 15. 이관을 승인하는 문서를 기안하자, 방통위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그대로 중간결재하고 K와 L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의 전결로 이관 승인을 통보하였다.

21) 2021. 12. 31. 퇴직하였음

22) 2023. 4. 30. 퇴직하였음

23) 2021. 2. 16. 퇴직하였음

24) ㉔에 교부결정 통지한 간접보조금의 경우 같은 해 2. 25. (재)㉔에 1차 간접보조금 80백만 원을 교부하였음

25) ㉔와 (재)㉔가 2021. 2. 10. 체결한 「팩트체크 사업 업무관련 인력·예산·자산 이관 협약서」에 따르면 ㉔(인계기관)은 (재)㉔(인계기관)에 팩트체크 플랫폼(<https://factchecker.or.kr>), 팩트체크 사업 업무 담당 직원,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계획서, 교부금 일체(2억 원) 등을 이관(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업무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후 재단은 아래 “나”항과 같이 같은 해 2. 16. 방통위에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방통위의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 변경 승인

방통위(☐팀)는 2021. 2. 16. 재단으로부터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2개 사업으로 세분하고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를 변경[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유지보수: ☐☐→(재)☐☐,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2021. 1. 14.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위탁기관인 ☐☐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재단의 사업수행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 26.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 설립을 허가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 사업수행계획과 같이 (재)☐☐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면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부문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플랫폼 기능 고도화 부문의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하여야 하며, 재단이 ☐☐에 임의로 교부한 간접보조금(2. 9., 1차 교부금 120백만 원)²⁶⁾을 반환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단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재단이 ☐☐에 임의로 교부한 간접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재단이 간접

26) ☐☐는 2021. 2. 16. 현재까지 교부된 간접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음

보조사업 수행주체 변경을 신청하자 같은 해 2. 17. 재단이 신청한 대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주체를 [가]에서 [라]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였다.

그 결과 간접보조사업자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라]가 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이 간접보조사업자를 변경하여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다]팀장(현 [라]부장) F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1번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구 [다]팀장 A 등 3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회적협동조합 [라]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후 승인한 데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경고)

①-가-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행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은 2020. 3. 6. 방통위로부터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310백만 원) 등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560백만 원)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4. 28. [가]를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이 매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는 등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는 2020. 10. 23. 9개 언론사에서 10명 및 법조계에서 3명(변호사) 등 총 13명의 전문 팩트체커를 위촉해 팩트체크 활동 등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다가 2021. 2. 15. (재)[가]로 사업을 이관하였고, (재)[가]는 같은 해 6. 30. 등 환경분야 전문가 등 9명을 전문 팩트체커로 추가 위촉해 시민 팩트체커들과 함께 팩트체크 활동(전문·시민 팩트체커의 팩트체크 결과물: 2020년 15건, 2021년 134건 등)

을 수행하였다.

그 후 (재)㉠은 2021. 7. 20. 「(재)㉠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²⁷⁾ 플랫폼에 등록된 팩트체크 콘텐츠 등 게시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²⁸⁾하고, 2022. 1. 26. 재단에 운영자문위원회를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단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10. 8.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부 주도의 팩트체크 사업 방식, 팩트체크 사업 관련 언론 협업 단체의 편향성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방통위에 ‘팩트체크 플랫폼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처리를 요구²⁹⁾하였고, 2021. 10. 21. 국정감사에서는 재단에 ‘공공 팩트체크 사업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재단은 2022. 4. 25. 2021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검증원칙 준수 및 위반 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추진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5. 4. 국회에 제출하였다.

27) 2020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따라 개발된 플랫폼 명칭으로 2021. 1. 26. 설립된 (재)㉠ ㉡와는 구별됨

28) 2021. 10. 8.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팩트체크 콘텐츠 게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29) 2020년 국정감사와 관련해 재단은 2021. 3. 5. 방통위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원칙 및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4. 5. 국회에 제출하였음

따라서 재단은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재)☐☐☐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⑤ 플랫폼에 등록된 게시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재)☐☐☐가 2022년도에 팩트체크 콘텐츠 등 게시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는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³⁰⁾을 교부 받고도 2022. 12. 31.까지 운영자문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데도,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팩트체크 결과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등 국회 시정·처리요구 사항 관련 대책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①-가-3)

보조사업자 등 공모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 업무 개요

방통위는 2020. 1. 13.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330백만 원) 사업,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내역사업, 150백만 원) 사업, 「팩트체크 인력양성」(내역사업, 130백만 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포함하는 팩트체크 사업(세

30) 운영자문위원회 예산: 100,000원 × 3건 × 7인 총 210만 원

부사업, 610백만 원)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다.

그리고 재단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2. 20.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 21.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3.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3. 30. 등³¹⁾ 위 3개 내역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위탁사업 공모를 하여 같은 해 4. 28. 가가³²⁾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표 6] 팩트체크 사업 현황

연도	세부사업	내역사업	위탁사업(간접보조사업)
2020년	팩트체크 사업(6.1억 원)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3.3억 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억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1.5억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1.14억 원)
		팩트체크 인력양성 (1.3억 원)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0.5억 원)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공모 부적정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1) 2020. 3. 30. 위탁사업 공모를 하였으나 1개 기관만 신청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에 따라 같은 해 4. 8. 재공고하였음

32) 가가, 가나, 가다, 가라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수행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³³⁾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는 내역사업별로 보조사업을 공모하고 보조금을 교부, 집행,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지침 제3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보조사업자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집행 단위인 내역사업별로 공모를 하여야 하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내역사업을 묶어서 세부사업 단위로 공모하는 경우에도 내역사업별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하여 각 내역사업 수행에 적합한 신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보조사업자 공모 부적정

그런데 방통위는 2020. 1월(날짜 모름)³⁴⁾ 3개 내역사업(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팩트체크 인력양성)을 포괄하는 세부사업(팩트체크 사업) 단위로 공모하고 내역사업별 공모신청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

33) 2020. 3. 6. 방통위가 재단에 통보한 '2020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일반사항]-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지침 제2조에 따르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4) 당시 방통위 업무 담당자는 공모 계획을 별도 기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으로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방통위는 같은 해 1. 13. 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위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e-나라도움의 경우 ‘내역사업별 공모신청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3개 내역사업별로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 후 재단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2. 20.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³⁵⁾

2) 간접보조사업자 공모 부적정

방통위의 위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에 따르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팩트체크 플랫폼 및 팩트체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고,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사업은 예비 팩트체커가 전문 팩트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팩트체크 인력양성」 사업은 팩트체크 이론·실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팩트체크 관련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20. 1. 19. 방통위에 3개 내역사업별로 각각의 실행예산을 편성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2. 21.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3. 6.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방통위가 “나-1)” 항과 같이 세부사업 단위로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단은 내역사업별 보조사업자로 선정³⁶⁾된 것이므로 내역사업

35)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경쟁방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내역사업별로 공모하였다면 보다 많은 기관이 응모할 수 있었고 내역사업별 사업수행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세부사업별 공모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36) 재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내역사업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음

별로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내역사업별로 공모하여야 하고, 여러 개의 내역사업을 묶어서 함께 공모하는 경우에도 내역사업별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같은 해 3. 30. 등 「2020년 팩트체크 사업 위탁사업 공모」를 하면서 내역사업별로 공모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 포함된 3개 위탁사업(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전체에 대한 간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내역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았다.³⁷⁾

이후 2개만 공모에 참여하였고, 재단이 같은 해 4. 8. 재공모를 하였으나 또한 2개만 참여함에 따라 재단은 2개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같은 해 4. 28. 2개를 3개 위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재단의 「2020년 팩트체크 사업 위탁사업 공모」(2020. 3. 30. 등)에 따르면 사업 신청 자격이 ‘팩트체크 관련 교육 및 사업 실적이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 신청 시 사업수행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미비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또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³⁸⁾

그리고 위 공모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과

37) 이와 달리 재단은 2022. 3. 4.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및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 등 2개의 위탁사업을 함께 공모하면서 공고문에 “단일 사업 또는 2개 사업을 병행 신청할 수 있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

38) ‘IV. 신청절차 및 방법 -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 다. 제출서류, 3. 신청 유의사항’ 등에 관련 내용 기재되어 있음

관련하여 개발된 플랫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취득하여야 하고, 웹 접근성 취득까지의 모든 제반비용³⁹⁾은 수행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⁴⁰⁾

※ 웹 접근성 품질 인증 관련

- (관련 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0. 6. 9.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46조로 이동)
- (재단 홈페이지) 재단은 위 규정 등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에 대해 '18. 2. 1. 최초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후 '23. 1. 31.까지 매년 인증을 갱신하였음(현재는 홈페이지 재개발로 잠정 중단)

또한 위 공모의 ‘IX. 신청서 작성안내’에 따르면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시된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고,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부분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의 항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위 공모에 대한 신청서류 접수 또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 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사업 종료 후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서류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상 필요 항목이 미비한 경우, 신청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접수 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39) 재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대한 최초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해 2017. 12월 심사수수료로 1,155,000원을 집행하였음

40) ‘II. 사업 수행내용 -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2) 주요 내용, (4) 플랫폼 구축 제안사항’ 및 [붙임자료]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재단은 2020. 4. 8. [가]로부터 위 공모에 대해 [가나], [가다], [가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겠다⁴¹⁾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가]가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4개 요구항목⁴²⁾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⁴³⁾하였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같은 해 4. 28. 위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 시 팩트체크 플랫폼의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취득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23년 11월 현재 [가] 등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한 후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취득을 위한 신청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220백만 원),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50백만 원), 「팩트체크 사례 분석 및 연구」(70백만 원), 2022년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84백만 원),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50백만 원) 등 5개 위탁사업에서 사업 신청자인 (재)[가]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에 요구되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V. 신청사 현황-1. 신청사 일반현황’ 및 ‘위탁사업 협약서’에 관련 내용 기재되어 있음

42) ‘표준화방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등

43) 이에 대해 재단(당시 업무 담당자 등)은 [가]가 제출한 사업 신청서(II. 세부사업 내용 - □ 팩트체크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운영(안) - 3. 기술부문 - 4) 사업관리부분)에 ‘기술적용결과표’,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보고서’, ‘웹 보안취약점 대응가이드에 따른 점검 보고서’ 등을 사업 결과보고문서로 제출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내용이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취득 및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등 4개 요구항목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 해당 결과보고문서에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취득,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요구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하겠다는 문구만으로는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된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해**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 공모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을 위배하여 내역사업별로 공모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간접보조사업자 공모 시 관련 기준 등과 다르게 내역사업별로 공모하지 않거나, 사업 공고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서류나 사업계획서상 필요 항목이 미비한데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보조사업 수행 분야

㉠-나-1)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1. 사건 개요

가.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방통위는 2020. 1. 13. 보조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팩트체크 사업 수행기관 공모('20. 1. 13. ~ 1. 29.)를 하고, 같은 해 2. 21.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3. 6. 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 610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4. 28. **재**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간경상보조금, 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산출물의 소유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 한 채 위탁

사업 협약(사업 기간: 2020. 4. 28. ~ 12. 31.)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9. 11. 보조사업 수행을 통한 산출물(플랫폼)의 소유권이 [가]에 있는 것으로 변경 협약서(안)을 작성하여 방통위에 보고한 후 같은 해 9. 18.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이 [가]에 있는 것으로 위탁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켰다.

나. 팩트체크 모바일 앱 소유권

재단은 2021. 4. 28. 보조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관기관인 재단에 있는 것으로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위탁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를 하여 같은 해 5. 18.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가]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5. 24. [가]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사업의 산출물(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이 (재)[가]에 있는 것으로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가. 국고보조금의 유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320-01)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320-07)는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

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예)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본적 경비 성격의 지출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위 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조사업 예산 세목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 공고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법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⁴⁴⁾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 한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방통위는 2020. 1. 13.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보조사업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재단은 2021. 4. 28.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간접보조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보조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관기관(재단)에 있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방통위가 재단을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

44)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예외

는 것으로 명기하는 등 보조사업 산출물의 소유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수행하게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당초 공고문의 내용 및 그와 다른 조치 등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보조사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단은 가라를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내용과 같이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으로 협약해야 하고,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 세목의 조정 여부에 대해 방통위 등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간접보조사업자도 아닌 제3자에게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협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부당 이전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방통위는 2020. 1. 13.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330백만 원) 사업 등 「2020년 팩트체크 사업」(민간경상보조금 610백만 원) 수행기관 공모('20. 1. 13. ~ 1. 29.)를 하고, 같은 해 2. 21.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3. 6.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위 공고문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같은 해 3. 6. 재단으로부터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간접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고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방통위로 명시하지 아니 한 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2)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및 소유권 이전 검토

재단(☐부)은 2020. 3. 30. 등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간경상보조금, 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사업 공모를 하고, 같은 해 4. 28. ☐☐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 협약(사업 기간: 2020. 4. 28. ~ 12. 31.)을 체결하였다.

위 공모 공고문의 ‘사업 수행 시 의무 준수사항’에 따르면 사업의 산출물 등 저작권은 간접보조사업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고문에 첨부된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협약서에는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후 재단은 ☐☐로부터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고, 같은 해 8. 19. 법무법인 ☐☐에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재단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플랫폼 소유권의 귀속주체 여부’와 ‘재단에 소유권이 있는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 8.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팩트체크 플랫폼의 저작권과 저작권 이외 권리의 향유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발자일 것⁴⁵⁾’으로 보이지만, 소유권

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속하게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관리책임의 주체가 개발자에 속한다는 점을 협약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위 법률자문 결과와 다르게 같은 해 9. 9. ㉠㉠ 회장 등과 ‘법률자문 결과 저작권법에 따라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개발자인 ㉠㉠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논의한 후 방통위에 플랫폼 등 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 세목조정(민간경상보조금→민간자본보조금)을 방통위에 요청하지 아니 한 채 ‘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을 통해 산출된 저작권과 플랫폼의 소유권은 수행기관에 있는 것’으로 위탁사업 변경 협약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3)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이전

방통위(㉠팀)는 2020. 9. 11. 재단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와 함께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된 플랫폼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에 있는 것으로 명시된 위탁사업 변경 협약서(안)을 이메일로 제출받았다.

그런데 방통위(㉠팀)는 같은 해 9. 14.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관련 재단의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결과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1)항”과 같이 방통위가 당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공고하였다는 사실과 “2)항”과 같이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라는 법률자문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법률자문 결과 팩트체크 플랫폼의 저작권은 플랫폼 제작자인 ㉠㉠에 귀

45) · 저작권: ① 「저작권법」 제2조에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공모전의 경우 공모전에 응모한 자가 저작권을 향유함
· 저작권 외의 권리: ①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간접보조금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함, ② 공고문에 플랫폼 구축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플랫폼 구축자는 기금지원 사업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간접보조사업자에 있다고 되어 있음

속되고, 저작권 외의 권리도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의 수탁자인 [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재단과 [가]의 보조사업 수행 협약서에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이 [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겠다'고만 보고한 후 보조사업 예산 세목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재단에 위탁사업 협약을 변경하도록 통보하였다.

그 후 재단이 같은 해 9. 18. 팩트체크 플랫폼 관련 저작권 및 소유권이 [가]에 있는 것으로 위탁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방통위가 보조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고 공고한 취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보조사업 예산 세목도 조정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가]에 귀속되었다.

나. 팩트체크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재단은 2021. 1. 14. 방통위로부터 일반용역비로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 개발」(383,720천 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용의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민간경상보조, 1,495백만 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4. 19. 방통위에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 개발」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100백만 원) 사업비의 비목 변경(일반용역비→민간경상보조)을 신청하여 같은 날 승인 받았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4. 28.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첨부 "제안요청서")'으로 명시하여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위탁사업 공모를 한 후 같은 해 5. 18.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가]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재단이 간접보조사업자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공고문과 같이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에 보고하여 보조금 예산 세목 조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 ㉔팀장 F는 같은 해 5월(날짜 모름)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같은 팀 선임 J(46)로부터 팩트체크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 귀속 주체를 어느 기관으로 할지 문의를 받고, ㉕본부장 K에게는 당초 위 공모 공고에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인 프로그램 등 산출물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아니 한 채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2020. 9. 8.)⁴⁷⁾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이 ㉔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F는 K로부터 ‘모바일 앱은 회원관리나 데이터 등 모든 정보가 플랫폼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㉔에게 모바일 앱의 소유권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⁴⁸⁾을 듣고, J로 하여금 같은 해 5. 24.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을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재)㉔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위탁사업 협약서 체결(안)을 기안하게 하여 K 및 이사장 D의 결재를 받았다.⁴⁹⁾

46) 2021. 12. 31. 퇴직하였음

47)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으로 개발한 플랫폼의 소유권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 어느 쪽으로도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㉔-나-1)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참조)

48) 해당 내용은 F의 진술 내용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재단 직원 등을 통해 퇴직한 K ㉕본부장에게 몇 차례 전화 연락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K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재단이 같은 해 6. 2. 등 4회에 걸쳐 ㉠에 간접보조금 100백만 원을 교부하여 개발한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에 귀속되었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팀 팀장 A는 “3-가-3)항”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당초 공고문의 내용 등을 보고하지 아니 한 채 법률자문 결과와 다르게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한 데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합니다.(경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① “3-가-2)항”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결과와 다르게 사업수행을 통해 산출된 저작권과 소유권이 ㉠에 있는 것으로 위탁사업 변경 협약서(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고(경고)

② “3-나항”과 관련하여,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F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1번 참조】

③ “3-나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장으로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과 다르게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로 부당하게 이전한 데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조치하니 향후 보조사업 수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49) 이 과정에서 재단이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에 귀속시키는 협약서(안)에 대해 방통위에 검토 또는 승인을 요청하거나, 방통위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함

1. 업무 개요

방통위는 2020. 2. 21. 재단을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610백만 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단으로 하여금 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2020년: 330백만 원, 2021년: 1,495백만 원, 2022년: 753백만 원)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2020. 4. 28. [가]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⁵⁰⁾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8.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키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와 (재)[가]⁵¹⁾가 팩트체크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게 하였다.

한편, 재단은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수행계획서⁵²⁾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으로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한 것과 별도로, 재단이 직접 2020. 6. 26. (주)[나]와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93,100천 원), 같은 해 7. 9. [나]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기반 팩트체크 기술개발」(95,700천 원), 2021. 8. 4. [나]와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공인발언 서비스」(77,000천 원) 등 3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7]과 같이 2022년까지 용역사

50)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간보조사업, 100백만 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용역사업 98.5백만 원) 「자동화 기술개발」(용역사업 98.5백만 원)

51) 방통위는 2021. 1. 26. (재)[가] 설립을 허가하고, 같은 해 2. 17.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사업 수행주체를 [가]에서 (재)[가]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였음

52) 재단은 2020. 3. 6. 방통위에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팩트체크 플랫폼은 간접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 등은 용역사업(일반용역비)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3. 6.) 위 계획서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음

업을 추진(용역비: 942,790천 원)하였다.

[표 7] 기술기반 팩트체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비 현황('20~'22년)

(단위: 천 원)

용역사업명 (수행기관)	2020	2021	2022	합계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기술개발 [대외 산학협력단('20~'21), 대내 산학협력단('22)]	95,700	430,000	8,000	533,700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 [주대자]	93,100	185,000	29,990	308,090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공인발언 서비스 [대내(주)]	-	77,000	24,000	101,000
합계	188,800	692,000	61,990	942,790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방통위의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이전 후속조치 부적정

방통위는 2020. 1. 13. 보조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공고하여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등 팩트체크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하여 같은 해 2. 21.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방통위는 같은 해 3. 6. 재단으로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팩트체크 플랫폼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개발하고,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과 「인터넷 환경의 이슈 모니터링 도구」를 용역사업으로 개발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수행계획을 제출받고, 같은 날 위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 후 방통위는 위 “[1]-나-1)항”과 같이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재단에 통보함으로써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가]에 귀속되었다.

가. 판단기준

방통위의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

면 ‘팩트체크 기술개발 등 관련 기반 지원이 민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지원을 통해 공공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확보된 자원에 대해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이 효율적’⁵³⁾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팩트체크 플랫폼은 간접보조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등 그 외 기술기반 시스템들은 재단이 여러 계약상대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결과물을 제3자가 소유·관리하는 팩트체크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탑재하는 경우 향후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유지보수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팩트체크 플랫폼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등 그 외 기술기반 시스템을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단의 당초 사업수행계획을 수정하여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방통위는 같은 해 9월(날짜 모름)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등 외 기술기반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단의 당초 사업수행계획은 그대로 두었다.

그 후 방통위는 2021. 1. 14. 재단으로부터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한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등을 고도화는 내용의 2021년도 팩트체크 사업 수

53)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한 팩트체크 기술 등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그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 결과 재단은 같은 해 9. 18. [가]와 위탁사업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키고, 아래 “3항”과 같이 재단이 용역사업으로 개발한 그 외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을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여 팩트체크 보조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재)[가]가 2023. 1. 25.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해 2. 28.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간접보조사업으로 개발한 팩트체크 플랫폼은 물론 재단이 직접 용역사업으로 개발한 나머지 3종의 정보시스템 또한 운영이 중단되었다.

3. 재단의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가.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기술개발

재단은 2020. 7. 9. [나] 산학협력단과 한국어 데이터세트 구축 등 내용의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기술개발」 용역계약(금액: 95,700천 원)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8.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4,504건의 한국어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다는 등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재단은 2021. 5. 10. 같은 산학협력단과 한국어 데이터세트 추가 생성 등 내용의 「인공지능 활용 팩트체크 기반기술 고도화」 용역계약(금액: 430백만원)을 체결하였다.

1) 판단 기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은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시스템이고, 재단은 2년 동안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보조금 526,700천 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위 2건의 용역계약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향후 데이터 세트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세트 활용을 위한 자동화 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 산출물을 팩트체크 관련 연구자, 사업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2021. 6. 11.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한국어 데이터세트 등 용역결과 산출물을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여 직접 검증의 보조도구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 30. 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83,036건의 한국어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다는 등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12. 16. 용역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12월 팩트체크 플랫폼에 인공지능 자동화 팩트체크 도구를 탑재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제작비 1,950천 원)하여 위 웹페이지를 통해 팩트체크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서버 이용료('22년의 경우 2,808,410원⁵⁴⁾)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2022년 12월 시범 서비스를 종료함으로써 525,700천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시스템이 개발 완료 1년여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재)☐☐☐

54) 2022년도 서버 이용료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하였음

가 2023. 2. 28.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서비스를 재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나.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

재단은 2020. 4. 27.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축·운영, 온라인 상 실시간 이슈 발굴, 검증대상 이슈 파악 및 동향 분석 등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분석 서비스」 용역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였다.

1) 판단 기준

위 “2항”과 같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은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시스템이고,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행업체는 관련 연구자 및 사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용역수행업체로 하여금 관련 연구자 등이 용역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용역결과 산출물을 관련 연구자 및 사업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2. 일반 제안 요청사항(마. 서비스 전략)’에 ‘수행업체는 팩트체크 플랫폼(2020년 11월 오픈 예정)에 산출물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플랫폼 운영 업체와 협력하여 적용방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후 같은 해 6. 1. (주)나사로부터 ‘재단 플랫폼 연동을 위한 요구조건을 파악하여 재단의 플랫폼 내 임베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6. 26. 위 회사와 용역계약(금액: 98,100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같은 해 12. 15. (재)㉠㉡에서 전문 또는 예비 팩트체커로 활동하는 멘토·멘티는 랜딩 페이지(키워드 입력, 일자별 TOP 1 이슈, 실시간 TOP 10 이슈, 팩트체크 기사), 이슈 모니터링(언급량, 이슈, 감성, 원문)⁵⁵⁾, 이슈 발굴(주요 이슈 발굴 분석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랜딩 페이지(멘토·멘티용과 동일 기능), 이슈 모니터링(언급량, 이슈)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차등을 두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였고, 재단은 같은 해 12. 17. 용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하였다.

그 결과 관련 연구자, 사용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용역결과 산출물이 (재)㉠㉡의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되어 재단에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게 되었고, 개발한 시스템 또한 멘토·멘티 등 (재)㉠㉡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팩트체크 관련 연구자, 사업체 등은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단은 2021. 6. 11. 위 회사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이슈 발굴 서비스 고도화」 용역계약(금액: 185백만 원)을 체결하여, 관리자 페이지를 고도화(이용자 현황 조회)하고 서비스 도메인을 변경하는 등 (재)㉠㉡가 관리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보조금 185백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더욱이 재단은 2022. 5. 18. (주)㉢㉣와 ‘시스템이 ㉤ 플랫폼⁵⁶⁾에 종속된 현재 상황에서는 (재)㉠㉡와의 협의가 필수적임’ 등 사유로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⁵⁷⁾를 하기도 하였으나, 팩트체크

55) 언급량: 특정 키워드에 대한 시계열 언급량을 볼 수 있는 기능, 이슈: 특정 키워드에 대한 연관 이슈어와 채널별 이슈어 랭킹을 볼 수 있는 기능, 감성: 키워드에 대한 긍·부정 분석과 감성 추이, 감성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원문: 키워드에 대한 채널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56) (재)㉠㉡가 소유·관리하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의미함

57) ㉠팀장 F 등 3명이 2022. 5. 18. (주)㉢㉣ 관계자 2명과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임

관련 연구자 등이 위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후 재단은 2022. 6. 28. 위 회사와 「실시간 이슈발굴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금액: 29,990천 원)을 체결하여 위 시스템을 유지보수해 오다가, (재)가 2023. 2. 28.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위 플랫폼의 하위 시스템으로 탑재된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 웹페이지 또한 운영이 중단되었다.

다. 공인발언 분석 서비스

재단은 2021. 5. 18. 팩트체크 플랫폼 등 공공 플랫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발언 서비스를 맞춤 설계·구축하는 내용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공인발언 서비스」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였다.

1) 판단 기준

위 “2항”과 같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은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시스템이고,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행업체는 관련 연구자 및 사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수행업체로 하여금 관련 연구자 등이 용역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용역결과 산출물을 관련 연구자 및 사업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위 용역의 제안요청서 ‘2. 일반 제안 요청사항(마. 서비스 전략)’에 ‘수행업체는 팩트체크 플랫폼(2020년 11월 이후 현재 운영 중)에 산출물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플랫폼 운영 업체와 협력하여 적용방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후 같은 해 6월 [내재]로부터 '㉔ 운영부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 사항 요청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업체는 ㉔ 플랫폼에 공인발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8. 4. 위 회사와 용역계약(금액: 77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같은 해 11. 30. 신문(중앙지 및 지방지 80개), 유튜브(정치/ 시사분야 채널 868개) 등에서 공인의 발언을 수집하여 분석·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하였고, 재단은 같은 해 12. 14. 용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하였다.

그 결과 재단이 2022. 7. 19. 수행업체와 공인발언 분석 서비스 운영 관련 회의⁵⁸⁾를 하면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인발언 서비스는 ㉔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팩트체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스피치넷 접속률이 저조하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내아] 팩트체크 등 타 플랫폼 내 서비스 탑재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그 후 (재)㉔가 2023. 2. 28.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위 플랫폼의 하위 시스템으로 탑재된 공인발언 분석 서비스 웹페이지 또한 운영이 중단되었다.

조치할 사항

58) 재단 [내]팀장 F 등 2명이 수행업체 관계자 2명과 스피치넷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한 내용임

59) 재단은 같은 해 10. 28. 위 회사와 용역계약(금액: 24백만 원)을 체결하고, ㉔ 내 '공인 발언' 메인 페이지 정보를 비회원에게 확대(발언자 클릭 시 5개 발언정보 및 출처기사 목록 제공) 제공하고, 기존 팩트체커 대상 서비스(발언 검색, 발언자 분석, 키워드 분석 등)를 일반회원까지 확대하였으나 비회원과 일반회원 간에도 정보제공 범위가 다르고, 공인발언 서비스를 [내아] 팩트체크 등 타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은 실시하지 않았음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특정 플랫폼에 탑재하여 특정 단체가 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용역결과 산출물의 사용, 유지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등 3개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용역계약을 통해 팩트체크 관련 업체, 연구자 등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특정 단체가 용역결과 산출물을 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관련 업체, 연구자 등의 용역결과 산출물 활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수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나-3)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등 용역계약 체결 등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은 2020. 2. 21. 방통위로부터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등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3. 6. 보조금(610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를 받는 등 2020년부터 2023년 12월 현재까지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은 2020. 4. 28. **과장**을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민간경상보조금, 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⁶⁰⁾ 간접보조사업 방식으로

60) 2023년 2월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과장**가 해산하였음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접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금 집행, 정산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⁶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1항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9. 12. 17.)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⁶²⁾의 경우 개발원가, 이윤, 직접경비로, 투입공수 방식⁶³⁾의 경우는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드는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용역사업은 직접경비 등에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경쟁입찰 등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

6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62)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법

63) M/M(Man-Months) 방식

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거나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침 제4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하는 경우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실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경비 외 이윤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간접보조금 집행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리·감독 부적정

재단은 2020. 4. 8. [가]로부터 위 [가]가 [가], [가], [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위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가]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기술부문을 담당⁶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간접보조사업 실행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일반용역비(60,000천 원⁶⁵⁾)로 편성되어 있어, [가]는 [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

64)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가]의 최근 플랫폼 개발 등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65) 사업수행계획서(IV. 예산 관리 및 집행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일반용역비 6천만 원 기재, 이후 같은 해 6. 15. 플랫폼 개발비 증가를 이유로 일반용역비를 6천 6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어 있었다.

따라서 재단은 (재)○○로 하여금 컨소시엄 구성 단체인 ○○가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에 드는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재)○○로 하여금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같은 해 4. 28. ○○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5. 14. 등 ○○에서 신청한 대로 간접보조금 100,000천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는 같은 해 5.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거나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지 않고 ○○와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계약금액 66백만원)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가 컨소시엄 참여 단체로서 간접보조금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윤 등이 포함된 기술료 14,705,734원을 지급하였다.⁶⁶⁾

4. 인쇄 등 용역계약 관리·감독 부적정

재단은 2022. 1. 27. (재)○○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재)○○의 간접보조금 집행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재)○○는 같은 해 9. 19. 및 11. 14. ○○와 ‘㉠ 기획·연구 자료집 및 플랫폼 활용가이드 개정판 제작(디자인) 용역’ 계약(계약금액 1,100만 원)과 ‘㉠ 자료집 제작 인쇄’ 계약(계약금액이 1,200만 원)을 각각 체결하였다.

66)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건 이윤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 함

그런데 인쇄업체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디자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동일 건에 대해 디자인과 인쇄 비용의 합계가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디자인과 인쇄를 통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재)☐☐는 위 2건의 계약이 동일한 인쇄물의 디자인 및 인쇄 건이고, 자료집 및 플랫폼 활용가이드의 경우 일반 간행물로서 고도의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하거나 디자인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 한데도 위와 같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하의 디자인 용역과 인쇄 용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재)☐☐는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와 같은 해 2. 3. ‘2022년 ⑤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계약금액 39백만 원)을 수의계약하였다.

그런데도 재단은 (재)☐☐로부터 증빙서류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재)☐☐의 간접보조금 집행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간접보조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윤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보조사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2020년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비

가. 업무 개요

방통위는 2020. 3. 6. 재단에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⁶⁷⁾ 보조금 330백만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내역사업)⁶⁸⁾ 보조금 150백만 원 등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보조금 계 610백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4. 28. ㉠㉠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및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내역사업) 사업 중 일부(사업명 동일, 114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10. 28. 등 ㉠㉠로부터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간접보조금에서 팩트체크 플랫폼 콘텐츠 관리운영 용역비 30,000천 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변경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1. 6. 승인하였다.

나. 관계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67)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및 팩트체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68) 예비 팩트체커가 전문 팩트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재단은 내역사업 간 보조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통위가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한 후 변경된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다른 내역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통위는 재단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2020. 4. 28. [가]를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내역사업 중 일부(사업명 동일, 114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날 [가]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10. 28. 및 같은 해 11. 6. [가]로부터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비에서 팩트체크 플랫폼 콘텐츠 관리운영 용역비 30,000천 원을 마련하여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변경[일반수용비 14,520천 원 감액, 임차료 15,000천 원 감액, 일반용역비(플랫폼 콘텐츠 관리운영

용역비) 30,000천 원 증액] 신청을 받았다.

위 협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의 보조금으로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한 후 같은 해 12. 31.까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⁶⁹⁾,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과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은 서로 다른 내역사업이다.⁷⁰⁾

따라서 재단은 방통위가 내역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 ㉠부장 E는 같은 해 11. 6. 담당자 주임 W⁷¹⁾가 ㉠㉠가 신청한 대로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한 데 대하여, 방통위에 내역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변경을 신청하거나 ㉠㉠의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전결)하여 승인하였다.

그 결과 ㉠㉠는 같은 해 11. 9. ㉠㉠와 팩트체크 플랫폼 콘텐츠 운영 등 「㉠㉠⁷²⁾ 운영」(기간: 2020. 11. 9.~12. 31.) 계약(금액: 30,000천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8. 및 11. 20.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보조금에서 계약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다른 내역

69) ㉠㉠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0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같은 해 11월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한 후 서비스에 돌입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70)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을 기획 및 개발’하고 ‘플랫폼 서비스 개시 후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및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은 ‘예비 팩트체커 양성 및 전문 팩트체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71) W는 2020. 5. 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1. 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음

72) 2020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따라 개발된 플랫폼 명칭으로 2021. 1. 26. 설립된 (재)㉠㉠와는 구별됨

사업에 해당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은 같은 해 12. 15. 재단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내역사업의 추진 실적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관리 등 ㉠을 운영’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 1. 15. 재단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보조금에서 ‘㉠ 운영·관리’를 위한 용역비 30,000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단은 2021. 2. 26. 방통위에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보조금(99,535,450원)과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내역사업 보조금(113,431,361원)을 각각 해당 내역사업의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2021년 재단의 실내건축공사비

가. 업무 개요

재단은 2021. 1. 11. 방통위로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사업」(내역사업) 보조금 13,557,000천 원을, 같은 해 1. 14.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내역사업)⁷³⁾ 보조금 1,245,000천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1. 29.부터 2. 7.까지 신규 사업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12,940천 원,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 보조금 10,000천 원, 계 22,940천 원으로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드는

73) 부문(문화예술) - 프로그램(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 단위사업(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서 확보) - 세부사업(팩트체크) - 내역사업(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행기관⁷⁴⁾은 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보조비목 예산의 30% 내에서 보조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행기관은 그 사유와 변경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등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지침 [별표 1]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르면 보조비목은 인건비, 운영비, 건설비(보조세목: 시설비⁷⁵⁾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운영비의 보조세목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⁷⁶⁾, 일반용역비⁷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이 보조금에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는 실내건축공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운영비(보조비목) 중 시설장비유지비(보조세목)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의 보조세목이 없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보조세목을 신설한 후 그 보조세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이 2021. 1. 8.과 같은 해 1. 13. 각각 방통위에 제출한 「시청자미디어재

74)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 및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

75)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등

76)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등(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7)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단 운영지원」 사업 등 및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82,500천 원), 일반용역비(247,100천 원) 등의 보조세목으로 구성되고,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사업」 운영비의 경우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320,000천 원) 등의 보조세목으로 구성되어 시설장비유지비 보조세목은 없었다.

따라서 재단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는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 보조세목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 운영비에서 해당 비용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 시설장비유지비 보조세목을 신설하여 그 세목에서 공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21. 1. 25. ㉠부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보조세목에서 13,600천 원을 집행하고,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팀에서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비유지비 보조세목을 신설하지 아니 한 채 일반용역비 보조세목에서 10,000천 원을 집행하여 계 23,600천 원을 공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 29.부터 2. 7.까지 공사⁷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2022. 2. 26. 및 2. 28. 방통위에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 보조금(일반용역비)에서 10,000천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일반용역비)에서 12,940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78) 계약일자: 2021. 1. 29. 계약상대방: ㉡(주), 계약금액: 23,600천 원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① “1항”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로 하여금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보조금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E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2번 참조】

② “2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의 보조세목 내역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상 보조세목을 신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5)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용도 외 사용

1. 업무 개요

방통위는 2021. 1. 14.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재단에 2021년도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2. 5. 및 5. 24. 팩트체크 사업 중 「기술기반 팩트체

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가라**를 선정하여 [표 8]과 같이 **가라**에 국고보조금 계 400백만 원을 교부하고, 2022. 1. 14. **가라**로부터 위 2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2. 25. 방통위에 위 2개 사업 등 팩트체크 사업 전체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8] 2021년 **가라**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

(단위: 천 원)

간접보조사업	구분	소계	보수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기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교부액	300,000	270,740	18,800	8,450	1,650	360
	집행액	296,206	270,740	15,909	7,879	1,320	358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교부액	100,000	78,760	8,760	-	12,480	-
	집행액	97,791	78,760	8,542	-	10,489	-
합계	교부액	400,000	349,500	27,560	8,450	14,130	360
	집행액	393,997	349,500	24,451	7,879	11,809	358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가. 중앙관서(방통위)의 의무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4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재단)와 간접보조사업자(기관)의 의무

보조금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호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간

접보조사업자는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는 참여인력 인건비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급여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후 과다 산정한 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았을 때 인건비 등이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간접보조금 교부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재단은 [가]가 인건비를 과다 산정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간접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으로써, [가]가 2개 간접보조사업에서 인건비 129,796,288원 및 29,973,318원 계 159,769,606원 과다하게 교부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인건비

재단은 2021. 1. 29. [가]로부터 참여인력 인건비를 [가]가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평균임금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표 9]와 같이 총 270,740천 원으로 산정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계획서(총 사업비 300,000천 원)를 제출받았다.

[표 9]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인건비 산출 명세

(단위: 원)

역할	기준월급여 ¹⁾ (A)	참여인원수(B)	참여기간(C)	참여율 ²⁾	금액(D=A×B×C)
IT PM	4,722,173	1	11개월	65%	51,943,870
IT서비스 기획자	3,115,939	1	7개월	40%	21,811,510
응용 SW 개발자	3,710,129	1	11개월	65%	40,811,320
SW 아키텍트	3,724,565	1	11개월	50%	40,970,160
응용 SW 개발자(지원)	2,568,551	1	10개월	45%	25,685,500
UI/UX 디자이너	2,652,952	1	11개월	60%	29,182,450
책임연구원	1,622,940	2	11개월	25%	35,704,460
연구원	2,240,007	1	11개월	45%	24,640,000
소계		9			270,749,270

주: 1. IT PM 등 6명은 SW기술자 평균임금, 책임연구원 등 3명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
 2. 최초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율이며, ㉠은 2021. 7. 12. 재단에 “SW노임단가 적용 계산 착오에 따른 2월~6월 투입률 정정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준 임금을 수정하지 않고 참여율만 변경하여 인건비 예산 총액은 동일함(「참여율 변경 예시」 ‘IT PM’ 65%→54.93%, ‘응용SW 개발자’ 65%→54.93%)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재단은 2021. 1. 14. 방통위에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⁷⁹⁾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매년 방통위에 보조사업 수행계획을 제출할 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 ㉠팀장 F는 위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계획을 기안하여 참여인력 인건비 산정기준을 알 수 있었고⁸⁰⁾,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가 수행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인건비가 실제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F는 2021. 2. 6. 같은 팀 선임 J⁸¹⁾로 하여금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계획’을 기안하게 한 후 ㉠본부장 K 및 이사장 L에게 특이사항이

79) 선임연구원: 4,078천 원 × 11개월 × 2명 = 89,710천 원

80) F는 간접보조금을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였음

81) 2021. 12. 31. 퇴직하였음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사업수행계획서대로 간접보조금이 교부 결정
되게 한 후 같은 해 2. 9. 등 총 3회⁸²⁾에 걸쳐 간접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는 같은 해 2. 25.부터 12. 24.까지 간접보조사업 참여인력 총
18명에게 12차례에 걸쳐 101건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표 10] 및 [별표 2]와 같
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 인건비는 140,943,712원인데도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인건비로 270,740,000원을 계상·집행함으로써 차액
129,796,288원⁸³⁾ 만큼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표 10] 2021년 팩트체크 플랫폼 고도화 사업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귀속월	지급일	참여인원수	평균 참여율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인건비 ¹⁾ (A)	정당 인건비 ²⁾ (B)	목적 외 사용액 (C=A-B)
2월	2.25.	9	39.44	25,980,140	12,429,828	13,550,312
3월	3.25.	9	38.06	26,291,180	12,038,254	14,252,926
4월	4.23.	8	37.01	23,151,840	10,895,857	12,255,983
5월	5.25.	8	37.01	23,151,840	10,895,857	12,255,983
6월	6.25.	9	32.21	21,904,540	11,139,158	10,765,382
7월	7.23.	12	35.65	31,772,750	16,775,887	14,996,865
8월	8.25.	12	36.34	30,638,880	18,014,228	12,624,653
9월	9.24., 9.30.	9	34.10	22,117,730	12,881,626	9,236,105
10월	10.25.	8	36.68	21,611,740	11,994,160	9,617,581
11월	11.25.	8	36.03	21,274,030	11,711,522	9,562,509
12월	12.24.	9	36.04	22,845,330	12,167,341	10,677,989
소계		18(중복 제외)		270,740,000	140,943,712	129,796,288

주: 1. **㈜**가 SW기술자 등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단에 신청·집행한 금액

2. **㈜**가 각각의 참여인원에게 지급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로서 정당하게
간접보조금으로 산정·집행하였어야 할 금액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재단은 2022. 1. 14. **㈜**가 인건비로 270,740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같은 해 2. 25. 방통위에 2021년

82) 2021. 2. 9. 120백만 원, 같은 해 6. 8. 90백만 원, 9. 29. 90백만 원

83) 보조사업 참여율을 초과하는 인건비로서 보조사업에 참여한 대가가 아니므로 **㈜**에서 지급했어야 함

팩트체크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인건비

재단은 2021. 5. 12. 및 5. 24. **가**로부터 참여인력 인건비를 **가**가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표 11]과 같이 총 78,768,206원으로 산정한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수행계획서(총 사업비 100,000천 원)를 제출받았다.

[표 11]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인건비 산출 명세

(단위: 원)

역할	평균임금 ¹⁾ (A)	참여인원수 (B)	참여기간 (C)	참여율 ²⁾ (D)	금액 (E=A×B×C×D)
IT PM	8,596,776	1	7개월	20%	12,035,486
IT서비스 기획자	9,217,987	1	6개월	15%	8,296,188
UI/UX 디자이너	5,232,211	1	6.5개월	32%	10,882,999
UI/UX 개발자	6,312,490	1	6.5개월	29%	11,899,044
응용 SW개발자	6,754,337	1	6개월	36%	14,589,368
시스템 SW개발자	5,288,766	1	6.5개월	35%	12,031,943
IT 테스터	4,342,874	1	6.5개월	32%	9,033,178
소계		7			78,768,206

주: 1. 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20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01호)]

2. 최초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율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F는 위 “가항”과 같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안한 사실이 있고,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참여인력 인건비가 실제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F는 같은 해 5. 24. J로 하여금 ‘2021 팩트체크 2차 위탁사업 협약 체결 계획보고’ 문서를 기안하게 한 후 K 및 D에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

고하고 결재를 받아 같은 날 사업수행계획서대로 간접보조금이 교부 결정되게 한 후 2021. 6. 2. 등 총 4회⁸⁴⁾에 걸쳐 간접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는 같은 해 6. 26.부터 12. 24.까지 간접보조사업 참여인력 총 11명에게 8차례에 걸쳐 총 48건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표 12] 및 [별표 3]과 같이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 인건비는 48,786,678원인데도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인건비로 78,759,994원을 계상·집행함으로써 차액 29,973,318원⁸⁵⁾만큼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표 12] 2021년 모바일 앱 개발 사업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귀속월	지급일	참여 인원수	평균 참여율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인건비 ¹⁾ (A)	정당 인건비 ²⁾ (B)	목적 외 사용액 (C=A-B)
6월	6.26.	6	27.33	10,033,130	7,013,178	3,019,952
7월	7.23.	7	28.00	12,032,864	8,467,660	3,565,204
8월	8.25.,9.2.	7	28.71	12,294,230	8,462,503	3,831,727
9월	9.24.	7	25.99	11,321,500	6,720,029	4,601,471
10월	10.25.	8	25.19	12,711,250	6,911,262	5,799,989
11월	11.25.	8	23.88	12,166,310	6,556,870	5,609,441
12월	12.24.	5	25.80	8,200,710	4,655,176	3,545,534
소계		11(중복 제외)		78,759,994	48,786,678	29,973,318

주: 1. **㈜**가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단에 신청·집행한 금액

2. **㈜**가 각각의 참여인원에게 지급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로서 정당하게 간접보조금으로 산정·집행 하였어야 할 금액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재단은 2022. 1. 14. **㈜**가 인건비로 78,759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같은 해 2. 25. 방통위에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는 참여인력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팩트체크 오픈

84) 2021. 6. 2. 30백만 원, 같은 해 8. 30. 40백만 원, 11. 22. 12백만 원, 12. 8. 18백만 원

85) 보조사업 참여율을 초과하는 인건비로서 보조사업에 참여한 대가가 아니므로 **㈜**에서 지급했어야 함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간접보조금 129,796,288원,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간접보조금 29,973,318원 계 159,769,606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회**과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및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개** **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인건비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며,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① 간접보조사업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개****래**로부터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서도, 상급자들에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간접보조금이 교부되게 함으로써 **개****래**가 과다 계상한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게 한 F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1번 참조】

② 간접보조사업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개****래**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데도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한 데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조치하니 향후 보조사업 수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경고)

다. 보조사업비 정산 및 성과 관리 분야

①-다-1)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 업무 개요

방통위는 2020. 2. 21. 재단을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등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3. 6. 재단에 보조금(610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를 하는 등 2020년부터 2023년 12월 현재까지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팩트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은 2020. 4. 28. 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접보조사업 방식으로 위 사업을 추진한 후 2021. 2. 26. 등 전체 팩트체크 사업에 포함하여 방통위에 정산 보고하였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등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 교부 목적과 달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가] 등 팩트체크 사업 간접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각 간접보조사업자들이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으로 간접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재단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통위에 정산보고하였고, 방통위도 그대로 보조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가](주차료 허위 정산)

[가]는 2020. 4. 28. 재단의 2020년 팩트체크 사업⁸⁶⁾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한 후 2021. 1. 15.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가]가 2020. 10. 15.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료 200,000원, 같은 날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료 350,000원을 [가]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86)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예산 100백만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예산 114백만 원),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예산 50백만 원) 등 3개의 내역사업(예산 합계 264백만 원)으로 구성

그리고 ㉔㉔가 제출한 증빙자료(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위 주차료는 같은 해 10. 23. ㉔87)에서 개최된 ‘팩트체크 설명회’ 및 ‘공모전-팩트체크톤 운영진 평가회의’를 위해 사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의 실제 입·출차 내역 등에 따르면 같은 해 10. 23. 입·출차 차량으로 ㉔㉔에 청구된 주차료가 없어 ㉔㉔가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에 따르면 ㉔㉔가 2020. 12. 4.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월 주차료 400,000원을 위 공사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⁸⁸⁾, 위 공사의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입·출차 차량에 대한 주차료 청구 내역에 따르면 주차료로 총 82,000원만 청구되어 ㉔㉔가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㉔㉔는 실제로 2020. 10. 23. 위 2개 행사를 위해 주차료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2월 주차료로 82,000원만 집행하고서도, 2021. 1. 15. 재단에 각각 200,000원, 350,000원, 400,000원 계 950,000원을 집행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868,000원을 허위로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㉔㉔(보조사업과 관계없는 도서 구입)

㉔㉔는 2021. 2. 5. 재단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후 2022. 1. 14.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㉔㉔가 2021. 1. 29.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

87) ㉔㉔ 소유 건물

88) 관련 증빙에 정확한 주차료 집행 목적 등은 미기재되어 있음

서에 따르면 위 사업은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이고, 세부적으로는 ‘전문-시민 팩트체커 협업 기능 고도화 및 시민 팩트체커 채널 개설’ 등 7개 항목⁸⁹⁾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은 2021. 11. 8. ‘㉡’, ‘㉢’ 등 [별표 4] “사업 목적 등과 관련 없는 도서 구매 명세”와 같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위 위탁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 없는 도서 계 23권, 총 405,250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재)㉠

1) 보조사업 기간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구독

㉠은 2021. 2. 5. 재단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같은 해 2. 15. (재)㉠로 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재)㉠가 위 사업을 수행한 후 2022. 1. 14.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재단이 2021. 2. 8. ㉠에 통보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위 사업의 사업기간은 같은 해 2. 5.부터 12. 31.까지이고, 위 통지서에 첨부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정산보고서와 관련 증빙(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재)㉠은 같은 해 11. 2. 등 구독기간이 2021. 9. 11.부터 2024. 8. 31.까지로 되어 있는

89) ‘전문-시민 팩트체커 협업 기능 고도화 및 시민 팩트체커 채널 개설’, ‘시민 팩트체커 간 협력하여 팩트체크 할 수 있는 협업공간 구성’, ‘회원별 활동 지표 개발(배지, 어워드 등 수상 활용) 및 회원별 페이지 강화’, ‘팩트체커와 시민이 검증에 유용한 도구 연동 및 안내 가이드 제작’, ‘팩트체크 데이터를 외부와 연동하는 공개 API 기능 개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팩트체킹 채널 개설 및 운영’, ‘스캠, 악성댓글 등 실시간 댓글 모니터링 및 어뷰징 대응 기능 마련’

‘④’의 구독료로 총 525,000원을 집행⁹⁰⁾하였는데, 사업기간 내 구독료는 53,710원 상당에 불과하여 471,290원⁹¹⁾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차료 허위 정산

(재)☐☐는 2021. 3. 23. 재단의 2021년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팩트체커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한 후 2022. 1. 14.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재)☐☐가 전문, 시민 팩트체커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2021. 6. 3. 주차료 200,000원을 ☐☐에 사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공사의 2021년 주차료 청구 내역 등에 따르면 (재)☐☐는 위 주차료 200,000원 중 19,000원만 사용하고 잔액 181,000원을 같은 해 8. 17. ☐☐로 이관⁹²⁾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특근매식비 용도 외 사용

(재)☐☐는 2021. 2. 22.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21. 3. 23.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및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한 후 2022. 1. 14.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정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재)☐☐는 2021. 5. 24. M과 N이 「팩트

90) '21. 11. 2., 같은 해 12. 6., 같은 해 12. 20. 세 차례에 나눠서 각각 175,000원, 총 525,000원을 집행

91) ■ '21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의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정당 구독료 추산

- 총 구독기간: '21. 9. 11.~ '24. 8. 31.(총 1,085일)
- 1일 구독료: 총 구독료 525,000원 ÷ 1,085일 = 484원
-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기간: '21. 9. 11.~'21. 12. 31.(총 111일)
-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기간의 구독료: 484원 × 111일 = 53,710원
- 사업기간 이후 기간의 구독료: 총 구독료 525,000원 - 정당 구독료 53,710원 = 471,290원

92) (재)☐☐는 같은 해 9월 ☐☐ 양천구에서 용산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체크 전문교육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시민팩트체크 양성 교육 준비’ 업무를 하면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간접보조금에서 특근매식비 12,000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5] “다른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한 보조금 명세”와 같이 2021. 5. 1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총 18건에 대하여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초과근무대장을 작성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에서 위 초과근무 관련 특근매식비 총 126,75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플랫폼 활용가이드 디자인 비용 중복 지출

(재)☐☐는 2022. 1. 27.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팩트체크 플랫폼 활용가이드 제작 등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2023. 1. 13.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재)☐☐는 2022. 9. 19. ☐☐와 ‘㉔ 기획 취재 및 연구 자료집 및 플랫폼 활용가이드 개정판(국문판) 제작 용역’ 계약(계약금액 1,1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0. ☐☐와 ‘㉔ 플랫폼 활용가이드 영문판 제작 용역’ 계약(계약금액 220만 원)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두 용역 계약은 같은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각각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표지 디자인’ 및 ‘내지 디자인’하는 과업⁹³⁾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가 ☐☐로부터 위 두 용역계약 결과물인 국문판 및 영문판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을 비교·검

93) ‘㉔ 기획 취재 및 연구 자료집 및 플랫폼 활용가이드 개정판 제작 용역’ 계약의 세부내역 중 ‘플랫폼 활용가이드 개정판(국문판 활용가이드)’의 과업내용과 금액은 표지 디자인 70만 원, 내지 디자인 26만 원, 가이드 조판 140만 원(10,000원×140쪽)이며, ‘㉔ 플랫폼 활용가이드 영문판 제작 용역’ 계약의 과업내용과 금액은 표지 디자인 70만 원, 내지 디자인 25만 원, 가이드 조판 125만 원(10,000원×125쪽)임

토하고, 두 결과물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국문판 플랫폼 활용가이드 이후에 제출한 영문판 제작 시에는 새롭게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복 계상된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KPM은 K가 2022. 11. 24. 및 같은 해 11. 29. 각각 위 두 용역의 결과물로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이 동일한 국문판(135쪽⁹⁴) 및 영문판(135쪽⁹⁵)의 플랫폼 활용가이드를 제출하였는데도, 영문판 플랫폼 활용가이드 제작 용역 계약에 계상된 표지 디자인 70만 원, 내지 디자인 25만 원 계 95만 원⁹⁶)을 조정하지 않은 채 2022. 12. 2. K에 계약금액 22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5) 과업기준에 미달하는 영상제작물 검수 처리

(재)KPM은 2022. 1. 27.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같은 해 4. 1.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플랫폼 운영 등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후 2023. 1. 13.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재)KPM은 주식회사 K와 2022. 7. 8. ‘팩트체크 전문교육 특강 자료집 제작’ 용역 계약(금액 1,060만 원), 같은 해 11. 1. ‘취재윤리, 취재법 강의 영상 제작’ 용역 계약(금액 530만 원)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2건 계약의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면 용역 업체는 팩트체크 기법,

94) 용역계약 체결 시 140쪽(140만 원)으로 하였으나 실제 결과물은 135쪽(135만 원)으로 당초 계약 시보다 조판 비용 5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함

95) 용역계약 체결 시 125쪽(125만 원)으로 하였으나 실제 결과물은 135쪽(135만 원)으로 당초 계약 시보다 조판 비용 1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함

96) 900,000원 = 950,000원(영문판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중복 계상비용) + 50,000원(국문판 5쪽 조판 비용 과다 집행액) - 100,000원(영문판 10쪽 조판 비용 추가 집행액)

이론 등과 관련된 교육 영상을 제작하되, ‘팩트체크와 데이터’ 등 각 주제에 대하여 30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같은 해 9. 9. ‘팩트체크 전문교육 특강 자료집 제작’ 용역의 ‘팩트체크와 데이터’ 주제와 관련하여 분량이 9분 16초에 불과한 영상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 [표 13]과 같이 6개의 영상을 과업 기준에 미달하는 분량(9분 16초~19분 35초)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표 13] 과업기준에 미달하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가 지급 명세

연번	간접보조사업명	계약명	계약 내용	주제	납품일	영상 분량
1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팩트체크 전문교육 특강 자료집 제작	주제별 30분 내외의 영상 제작	팩트체크와 데이터	'22. 9. 9.	9분 16초
				데이터 수집		13분 24초
				데이터 분석, 정제		18분 21초
				데이터 시각화		10분 11초
2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취재윤리, 취재법 강의 영상 제작	상동	팩트체크와 취재윤리	'22. 11. 30.	13분 00초
				팩트체크 취재 기초		19분 35초

자료: (재)☐☐☐ 정산보고서 등 재구성

그런데도 (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하고 같은 해 9. 23. 및 12. 14. 각각 계약대금 1,060만 원 및 530만 원 전액을 지급한 후 2023. 1. 13. 위 계약대금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재단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앞으로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 교부 목적과 달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한 간접보조금에 대해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 교부 목적과 달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다-2)

팩트체크 결과물 성과 측정 부적정

1. 업무 개요

방통위는 2020. 3. 6. 재단에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310백만 원) 등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610백만 원)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는 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4. 28. ㉠㉠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 사업의 성과(팩트체크 결과물 건수)가 2020년도 19건, 2021년도 134건, 2022년도 195건으로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방통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방통위는 재단이 제출한 실적을 위 보조사업의 성과로 관리하였다.

[표 14] 팩트체크 사업 실적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2020년			2021년			2022년		
재단	개과	팩트체크 결과물	재단	(재)개과	팩트체크 결과물	재단	(재)개과	팩트체크 결과물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310)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0)	계획: 16건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1,495)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200)	계획: 104건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753)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480)	계획: 166건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마련 (135)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114)	실적: 19건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1,245)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220)	실적: 134건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987)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84)	실적: 196건
팩트체크 인력양성 (115)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50)	달성률: 118.8%		팩트체크 토크 행사 개최 (50)	달성률: 128.8%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 (50)	달성률: 126%
				팩트체크 사례 분석 및 연구 (70)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통위의 매 연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방통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당초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있는 그대로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임의로 성과를 과다하게 측정하여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통위는 재단이 보고한 실적이 사업수행계획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사업의 성과(팩트체크 결과물 건수)로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0년도 및 2022년도의 경우 위 내역사업에 「팩트체크 인력양성」 등 다른 내역사업의 성과를 포함하여 세부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고, 방통위는 재단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관리·감독하면서 이를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 2020년도의 경우

방통위는 2020. 2. 21. 재단을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중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팩트체크 인력양성」 등 3개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방통위는 같은 해 3. 5. 재단으로부터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한편,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의 성과 목표를 ‘팩트체크 결과물 업로드 건수 16건 이상’으로 설정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날(3.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은 같은 해 4. 28. ㉠㉠를 [표 14]와 같이 2020년도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 중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사업명 동일), 「팩트체크 인력양성」 사업 중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12. 15. ㉠㉠로부터 2020년도 「기술기반 팩트체크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가 ‘팩트체크 콘

텐츠 업로드 15건⁹⁷⁾(전문 팩트체커 15건, 시민 팩트체커 0건)인 것으로 간접보조사
업 실적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2021. 1. 29. 방통위에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최종실적보고
서를 제출하면서, 팩트체크 결과물(건) 실적에 [가]가 제출한 팩트체크 콘텐츠
업로드 15건에 전문 또는 시민 팩트체커의 활동과 무관한 공모전(「팩트체크 인력
양성」 사업) 수상작 4건까지 포함시키고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문 팩트체커 10개사, 시민 팩트체커 33명이 활동한 결과 팩트체크 결과물이 19
건’이어서 성과목표(16건)를 118.8% 달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실적을 보고하
였다.

그리고 방통위는 재단으로부터 전문·시민 팩트체커의 팩트검증 결과, 공모
전 수상작 등의 팩트체크 콘텐츠 현황 목록을 일일·주간·월간 보고 등의 형식
으로 보고 받았는데도 재단이 제출한 실적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
대로 두었다.

나. 2021년도의 경우

방통위는 2021. 1. 13. 재단으로부터 2021년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의 성과
목표가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사업의 ‘팩트체크 결과물 건
수 104건 이상’으로 설정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2. 5. 보조금 교
부 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2. 5. [가]를 [표 14]와 같이 2021년 「기술기반의 팩
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팩트

97) [가]가 2020. 12. 15. 재단에 제출한 보조사업 수행상황 종합결과보고서에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
영」 사업의 성과가 ‘팩트체크 제안 15건’ 등이라고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2021. 1. 29 및 2022. 1. 26. 재
단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는 2020년도 실적이 ‘팩트체크 콘텐츠 업로드 수’ 15건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

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 중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팩트체크 사례 분석 및 연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재단은 2022. 1. 14. (재)☐☐☐⁹⁸)로부터 일반인 공모전 수상작을 포함하여 팩트체크 콘텐츠 건수가 163건⁹⁹)으로 작성된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재단은 같은 해 1. 27. 방통위에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에 해당하는 전문 또는 시민 팩트체커 활동의 결과만을 추려 팩트체크 결과물을 134건(전문 팩트체커 68건, 시민 팩트체커 66건, 목표 달성률 128.8%)으로 수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하였고, 방통위도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2021년도에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였다.

다. 2022년도의 경우

방통위는 2022. 1. 25. 재단으로부터 2022년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의 성과 지표가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사업의 ‘팩트체크 결과물 업로드 건 수 156건 이상’으로 설정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1. 27.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1. 27. (재)☐☐☐를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 중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시민 참여 공모전 개최」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재단은 2023. 1. 13. (재)☐☐☐로부터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

98) 재단은 2021. 2. 15. ☐☐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재)☐☐☐로 이관하는 것을 승인 하였음

99) (재)☐☐☐가 2022. 1. 14. 재단에 제출한 보조사업 수행상황 종합보고서에는 콘텐츠 업로드 건수만 기재되어 있어 세부 명세는 확인되지 아니 함(전문 팩트체커의 팩트검증은 68건, 시민 팩트체커의 팩트검증은 66건, 공모전 수상작은 45건)

축」 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가 실제 117건(전문 팩트체커 49건과 시민 팩트체커 68건)인데도, 위 117건에 다른 내역사업(「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의 성과인 공모전 수상작 19건, 팩트체커 양성 교육과정 수료작 59건 계 78건을 더하여 팩트체크 콘텐츠가 총 195건인 것으로 작성된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같은 해 1. 31. 방통위에 최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21년도의 경우와 같이 전문 또는 시민팩트체커 활동의 결과만을 추리지 아닌 채 (재)☐☐가 제출한 실적 그대로 팩트체크 결과물이 195건(목표달성률 125%)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방통위는 재단으로부터 전문·시민 팩트체커의 팩트검증 결과, 공모전 수상작 등의 팩트체크 콘텐츠 현황 목록을 일일·주간·월간 보고 등의 형식으로 수시로 보고 받았는데도 재단이 제출한 실적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아닌 채 그대로 두었다.

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팩트체크 결과물 건수 등 보조사업 성과를 측정하였는지 검증하여 보조사업의 성과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의 성과 지표 및 성과 측정방법과 다르게 사업성과를 과다하게 측정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가. 인사 및 복리후생, 계약 분야

2-가-1)

기간제계약직 채용 지원자 경력 인정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은 2020. 3. 25. ㉠㉡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¹⁰⁰)에 근무할 5급 상당 기간제계약직(계약기간: 임용일~2020. 12. 31.)을 채용하기 위해 「2020년 시청 자미디어재단 상반기 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4월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O를 채용하였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재단의 「인사규정」 제14조의 [별표 1] 및 채용공고 II. 지원 자격에 따르면 5급 상당 기간제계약직의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분야는 창업지원 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채용공고 II. 지원 자격에 따르면 관련분야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상 관련 분야 기재부분(근무부서, 수행업무 명시)만 인정하고, 실무경력 증빙으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모두 면접 시 제출하

100) ㉠㉡로부터 재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미디어분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2020. 4. 1.부터 2023. 3. 31.까지 3년간 운영('20년 688백만 원, '21년 509백만 원, '22년 509백만 원, '23년 118백만 원 집행)

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탈락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재단의 「인사규칙」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외부위원이 위원장인 인재선발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험위원회에서 임용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제출 서류의 구비 및 유효여부 등 형식요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한경쟁 방식 채용의 경우 합격자 발표 전 당해 채용 절차가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인사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면접 시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채용공고에서 안내한 관련분야 경력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도 지원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O가 2020. 4. 23. 면접전형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O의 경력 101)이 채용공고에서 관련분야로 정한 창업지원 분야와 관련 없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위 사람이 제출한 경력 중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국

101) O가 제출한 지원서 상의 각 기관별 담당업무는 재협의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발달장애인 가족상담, 재단의 경우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기술서 집필, 주재단의 경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작, 재단(재단 송과지회)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운영과 관리, 상담가 양성 등 사업총괄로 되어 있음

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표 15]와 같이 (주)㉠㉡ 등 3개 기관의 경력 1,203일¹⁰²⁾로서 O는 학사학위 취득 후 4년(1,460일) 이상의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재단 ㉢부 6급 H와 부장 직무대리 G¹⁰³⁾는 2020. 4. 23. 기간제계약직 면접전형 시 O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면서 (주)㉠㉡ 등 5개 회사의 근무 경력 중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 경력을 제외한 4개 기관의 근무경력을 관련분야인 창업지원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취득¹⁰⁴⁾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같은 날 ‘2020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 채용 형식요건, 적격성 심사 및 임용후보자, 예비후보자 추천·심의’ 안건에 O의 임용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결과를 “이상없음”으로 기재하여 시험위원회¹⁰⁵⁾에 상정하였고, 시험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하면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인 G의 안건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위 사람들은 O를 포함한 채용대상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인사위원들에게 채용의결 인사위원회 안건, 채용공고문 및 심사위원 구성 상황,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학위 및 경력증명서류 등을 메일

102) 채용공고에서 실무경력 증빙으로 경력증명서, 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탈락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송파지회의 경우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였으나 관련 4대 보험 가입이력 및 소득발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의 경우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103) ㉢부 6급 H는 2019. 4. 1.부터 2023. 3. 5.까지 채용관련 실무자로서, 부장 직무대리(현 부장, ㉢부 근무) G는 2020. 1. 13.부터 현재까지 위 관서 책임자로서 채용관련 업무를 총괄

104) O는 1999. 2. 25. 학사학위 취득, 2019. 2. 14. 석사학위 취득으로 2020. 3월 채용공고 시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충족하여야 5급 상당 기간제계약직 채용이 가능

105) 대학교수(위원장 및 위원), ㉠㉡ 국장 등 외부 3인, ㉢센터장 및 ㉣센터장 등 내부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로 제공하였고, 인사위원회¹⁰⁶⁾도 2020. 4. 27. 서면으로 2020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개방형직위 및 상반기 기간제계약직 채용 절차 점검 심의·의결을 하면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재단은 같은 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O에게 5. 1.부터 [마] [재]팀에 근무¹⁰⁷⁾하도록 발령하였다.

[표 15] 면접 시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경력 현황

기관명	경력기간	제출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기재된 업무	경력일수
개화	2016.11.1.~ 2017.6.30.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서울개인별지원팀	241
대강	2017.9.1.~ 2017.12.31.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연구원	121
쑤개타	2018.1.1.~ 2020.4.2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전문위원	841
(사)대강 송파지회	2009.10.3.~ 2020.4.20. (2014.1.29.~ 2016.10.31.)	경력증명서	자기결정사업 총괄 (*14.1.29.~16.10.31. :회장역임)	3,852 (경력인정 불가)
대라	2014.12.17.~ 2015.8.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27 (경력인정 불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3가지 서류 모두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 기간			-	1,203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창업지원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4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O가 면접을 거쳐 기간제계약직으로 최종 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기간제계약직 채용 시 채용공고 등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사항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시

106)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위원 3인, 경영기획본부장(위원장) 및 전략기획부장 등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107) O는 2020. 5.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 후 1회 계약 연장을 통해 2021. 12. 31.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기 바랍니다.(경고)

㉒-가-2)

창립기념일 운영 및 후생복지활동 실시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은 「복무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휴일을 운영하고, 「복리후생 운영규칙」에 따라 부서별 후생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¹⁰⁸⁾(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혁신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이 아닌 창립기념일(5. 15.)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함에 따라 무급휴일로 운영하거나, 휴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추가 지출된 인건비는 2020년 26백만 원, 2023년 30백만 원으로 추산¹⁰⁹⁾된다.

3. 근무시간 중 후생복지활동 실시

108)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09) 2021년 및 2022년 창립기념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추가 인건비 미발생

가.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혁신지침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체육 및 문화행사 등 후생복지활동을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¹¹⁰⁾하도록 하면서, 후생복지활동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방침을 내리거나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단 내 각 부서의 후생복지활동 실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16]과 같이 매년 21개 내지 22개의 부서가 혁신지침을 따르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 중에 체육 및 문화행사인 후생복지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평일 업무시간 중 후생복지활동 실시 현황(2020년~2022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실시부서(개)	22	21	22	65
참여인원(명)	269	278	284	831
집행예산(천 원)	26,625	27,115	27,339	81,079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다르게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후생복지활동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110)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매년 9~11월 경 공연관람, 야외활동 등의 후생복지활동 실시

1. 업무 개요

재단은 재단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기준

「보수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보수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 가족이 「보수규칙」에 따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들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가족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재단의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재단은 [표 17]과 같이 직원이 기존 부양가족이 세대분

리를 하였는데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계속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비연고근무자 합숙소 거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보수규칙」에 따른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5명의 직원에게 총 279만 원의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가족수당 과다지급 현황

(단위: 만 원)

성명	부서(직급)	유형	과지급 사유	과다지급액
P	-	세대분가 신고지연	세대분리 부,모에 대한 수당 '21년 10~12월, '22년 1~12월 지급	60
Q	-	복수 세대주	직원 주민등록지 주소에 복수 세대주로 등록된 '부'에 대한 가족수당 '20년 1월~'23년 7월 지급	99
R	-	세대분가 신고지연	세대분리 모친 수당 '21년 3월~'23년 8월 지급	60
S	-	비연고근무자 가족수당 지급	비연고근무자 합숙소 지원 시기 모 가족수당 '21년 2월~'23년 1월 지급	48
T	-	비연고근무자 가족수당 지급	비연고근무자 합숙소 지원 시기 부 가족수당 '23년 3월~8월 지급	12
합 계				279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보수규칙」 제15조 제7항 등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가-4)

수익계약 체결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은 재단의 「계약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이나 기타 관

계법령이 인정하는 경우¹¹¹⁾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사무처리지침」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계약책임자는 선정된 대상업체들로 하여금 제안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중 가장 경제성 있는 제안 또는 견적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같은 지침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책임자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2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책임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2개사 이상의 서로 다른 대상업체들로부터 각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비교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재단이 2020년 이후 체결한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재단이 2020년 10월 ‘[재]센터 미디어크리에이션 스튜디오 실내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2020. 10. 13. 주식회사 [내] [매]이하 “(주)내매”라 한다]으로부터 (주)내매 명의의 견적서(견적금액 2,000만 원)와 주식회사 [내] [매] 명의의 견적서(견적금액 2,226만 원)를 한꺼번에 제출받은 뒤 그 중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한 (주)내매와 같은 해 10. 20. 수의계약(계약금액 2,000만 원)을 체결하는 등 [별표 6] “계약상대자 1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일괄 제출받은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30건의 수의계약에서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

2개 업체 각각이 아닌 특정 1개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까지 일괄적으로 제출 받아 형식적으로 비교 견적을 실시한 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수의계약 시 특정 1개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까지 제출받아 형식적으로 비교 견적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개별 사업 관리 분야

㉒-나-1)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활동비 지원 부적정

1. 업무 개요

재단은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 사업¹¹²⁾의 세부사업으로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주민 스스로 제작·공유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¹¹³⁾하였다.

2. 판단기준

「2022년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계획(안)」(이하 “콘텐츠 제작 계획(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콘텐츠 제작지원은 ① 콘텐츠 기획안

112)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2018년 50백만 원의 예산으로 미디어 교육을 시작하였고, 2022년 기존 미디어 교육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추가[2023년 예산 3.6억 원(미디어 교육: 2.4억 원, 콘텐츠 제작: 1.2억 원)]

113) 2022년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106백만 원 예산을 편성·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2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효용성 입증에 어렵고 미디어 교육에 집중하고자 2024년 정부예산 편성에 서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

공모 → ② 기획안 선정심사 → ③ 콘텐츠 제작지원 → ④ 최종심사 → ⑤ 제작 활동비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재단은 콘텐츠 제작 계획(안) 및 각 지역센터별 「2022년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이하 “지역별 공모”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센터별로 각 10편의 콘텐츠를 선정¹¹⁴⁾하면서, 기획안 선정 단계에서 제작실행 가능성 등에 30점을 배정한 후 최종심사 시 제작계획 이행 정도 등에 20점을 배정하여 선정부터 최종심사까지 콘텐츠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고, 응모신청서의 유의 및 동의사항에서도 선정심사 시 제출된 기획안에 따라 반드시 콘텐츠를 완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계획(안) 및 지역별 공모에 따르면 당초 선정된 기획안의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 시 선정심사 시 차순위였던 기획안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60점 이상 득점 시 제작활동비를 각 콘텐츠 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¹¹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각 마을공동체가 제출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지원할 때에는 각 콘텐츠가 당초 기획안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순위 콘텐츠를 추가 선정하거나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최종 심사를 통한 콘텐츠의 품질,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작활동비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재단이 2022년 제작활동비를 지원한 100편의 콘텐츠를

114) 각 지역센터(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별로 10개(총 100개)의 콘텐츠를 선정하며, 1개 마을공동체(3인 이상으로 구성)에서 최대 3편의 콘텐츠 제작 가능

115)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미지급, 70만 원~50만 원까지 각 센터별로 예산, 콘텐츠 품질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점검한 결과, [별표 7] “2022년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부실집행 사례”와 같이 ㉠센터의 ‘㉡’ 등 7편의 콘텐츠는 마을공동체에서 주제변경 등을 요청하자 각 센터에서 주제변경을 임의로 승인하여 당초 기획안과 다른 콘텐츠가 최종 제출되었고, ㉢센터의 ‘㉣’ 등 2편은 기 선정된 콘텐츠의 제작이 불가하자 추가 모집에 따른 제작기간이 촉박하고 기존에 선정된 마을공동체의 제작역량 등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추가 모집 등의 절차 없이 기존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2곳에 추가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센터의 ‘㉥’ 등 2편은 기존 콘텐츠 제작 불가로 2022년 12월에 추가 공고를 하면서 사업종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제작을 완료하기만 하면 각 콘텐츠 당 50만 원의 제작활동비를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후 최종 심사를 통한 콘텐츠 품질 등 평가 없이 제작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계획 등을 따르지 않고, 당초 선정된 기획안과 다른 콘텐츠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작 불가한 콘텐츠 발생 시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거나 최종 심사를 통한 콘텐츠 품질 등을 평가하지 않고 제작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팩트체크 사업 예산집행 현황(2023년 8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1년			'22년			'23년			
		수행 기관	예산	정산			수행 기관	예산	정산	수행 기관	예산	정산	수행 기관	예산	정산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국민참여형 팩트체크 시스템	개개	100	100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개마	200	199	개마	480	441	미정	300	-	
		재단	100	100		개라	300	296	재단	143	138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개발	재단	110	109	시활용 자동화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재단	545	522	재단	30	8	-	0	-		
					실시간 온라인 이슈 발굴 시스템 고도화	재단	350	328	재단	100	92	-	0	-		
개라	100	98	소계	-	1,495	1,443	-	753	679	-	300	-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개개	72	72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팩트체크 역량 강화 교육	개마	220	177	개마	84	84	재단	265	154	
							대학	12	12	대학	24	24				
	재단	320	316	재단			312	298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활동 등에 대한 홍보비	개개	22	22		팩트체크 교육 콘텐츠 개발	재단	260	254	재단	220	208	-	0	-	
							건물 임차료 등 기타 경상비	개개	20	19	국내외 팩트체크 조사분석	재단	186	180	재단	170
	팩트체크 자문단 운영	재단	21	21		개마	70	70	팩트체크 홍보 및 국제협력	재단		127	121	재단	127	120
소계	-	135	134	소계	-	1,245	1,169	-		987	946	-	310	167		
팩트체크 인력양성	팩트체크 교육지원	재단	65	63	팩트체크 인력양성	팩트체크 교육지원	재단	65	63	팩트체크 인력양성	팩트체크 교육지원	재단	65	63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개개	50	49	팩트체크 인력양성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개개	50	49	팩트체크 인력양성	팩트체크 공모전 개최 지원	개개	50	49		
	소계	-	115	112	소계	-	115	112	소계	-	115	112	소계	-	115	112
합계 (간접보조사업자)	-	560 (264)	555 (262)	합계 (간접보조사업자)	-	2,740 (952)	2,612 (891)	-	1,740 (638)	1,625 (598)	-	610 (-)	167 (-)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 삭제 》

[별표 3]

《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 삭제 》

[별표 4]

사업 목적 등과 관련 없는 도서 구매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구입일	출판사	도서명	금액
1	2021-11-08	-	-	18,000
2	상동	-	-	14,400
3	상동	-	-	20,700
4	상동	-	-	10,350
5	상동	-	-	26,500
6	상동	-	-	24,300
7	상동	-	-	23,750
8	상동	-	-	23,750
9	상동	-	-	11,700
10	상동	-	-	18,050
11	상동	-	-	15,300
12	2021-12-09	-	-	15,750
13	상동	-	-	14,400
14	상동	-	-	17,010
15	상동	-	-	16,020
16	상동	-	-	13,500
17	상동	-	-	16,650
18	상동	-	-	14,400
19	상동	-	-	16,200
20	상동	-	-	17,820
21	상동	-	-	15,300
22	상동	-	-	25,200
23	상동	-	-	16,200
합계	-	-	-	405,250

자료: [가림] 정산보고서 등 재구성

[별표 5]

다른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한 보조금 명세

(금액단위: 원)

집행 보조사업	특근매식비 집행일	집행 대상자	업무내용	집행금액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정당 보조사업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2021-05-10	N	시민팩트체커 교육 홍보	6,000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2021-05-12	N	시민팩트체커 교육 강사 회의	6,000	상동	
	2021-05-24	M N	시민팩트체커 양성 교육 준비	12,000	상동	
	2021-05-27	N	시민팩트체커 양성 교육	6,000	상동	
	2021-06-18	N	전문팩트체커 양성 교육 준비	6,000	상동	
	2021-06-24	N	이달의 팩트체커상 준비	5,400	상동	
	2021-07-20	N	시민팩트체커 양성 교육 준비	11,000	상동	
	2021-07-23	N	팩트체크톤 홍보	9,000	상동	
	2021-07-25	N	전문교육 및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변경	5,850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2021-08-06	N	시민팩트체커 양성 교육 진행	7,000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2021-08-09	N	팩트체크톤 및 교육 준비	7,000	상동	
	2021-08-17	N	교육, 팩트체크톤 중간보고 준비	7,000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및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2021-08-18	N	교육, 팩트체크톤 중간보고 준비	6,000	상동	
	2021-08-25	N	팩트체크톤 사전 준비	7,000	상동	
	2021-08-26	N	팩트체크톤 사전 준비	7,000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	
	2021-09-01	N	팩트체크톤 정산 정리	6,000	상동	
	2021-10-01	N	지역시민교육 사전 준비	7,000	상동	
	2021-10-20	N	전문팩트체커 보수교육	5,500	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합계	-	-	18건	126,750	-

자료: (재)카마의 정산보고서 등 재구성

[별표 6]

《 개인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내용 삭제 》

[별표 7]

2022년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부실집행 사례

(단위: 만 원)

콘텐츠명	소속센터	공동체명	제작활동비 지급액	부실집행 사유
-	-	-	7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7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5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7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7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7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70	▪ 기획안 임의 변경: 공동체에서 주제변경을 요청 콘텐츠 제작 계획과 달리 센터에서 주제 변경 승인
-	-	-	70	▪ 공모 등 없이 추가작 선정: 공모기간 및 제작기간 촉박하여 공모 절차 등 없이 기 선정된 마을공동체 추가 제작
-	-	-	60	▪ 공모 등 없이 추가작 선정: 공모기간 및 제작기간 촉박하여 공모 절차 등 없이 기 선정된 마을공동체 추가 제작
-	-	-	50	▪ 최종 심사 없이 제작활동비 지급: 기존 콘텐츠 제작 포기로 12월 재선정 시 제작활동비 지급액 결정, 최종심사 생략
-	-	-	50	▪ 최종 심사 없이 제작활동비 지급: 기존 콘텐츠 제작 포기로 12월 재선정 시 제작활동비 지급액 결정, 최종심사 생략
11편	-	-	700	-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IV. 개별처분요구사항: 별첨

방송통신위원회

문 책 요 구

제 목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 부당 처리
기 관 명 시청자미디어재단
내 용

재단 [라]부장 F는 2019. 1. 1.부터 2021. 1. 24.까지 재단 [내]부에서 팩트체크 사업을 담당하다가 2021. 1. 25.부터 2023. 6. 30.까지 재단 [대]팀 팀장으로서 팩트체크 사업 등 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재단은 2021. 1. 14.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 등 2021년도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제출한 후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500백만 원)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위탁기관인 [가]116)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재단은 2020년도에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610백만 원)을 수행하면서, 2020. 4. 28. [가]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8.

116) [가]는 2020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간접보조사업의 주관보조사업자로서 컨소시엄([가], [나], [다], [라])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협약을 변경하여 플랫폼의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켰다.

그 후 2020년 팩트체크 사업에 [가]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라]의 대표 I는 2020. 12. 31. 방통위에 [가] 컨소시엄 구성원 4개 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등 [가] 컨소시엄이 수행하던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마]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21. 1. 26.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단은 같은 해 1. 29. [가]로부터 [가]가 2020년도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라]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2021년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보조금법 제23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보조금 교부 조건, 협약서 등 사업수행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통위의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등 2021년도 팩트체크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021. 1. 14.)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가 시공,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¹¹⁷⁾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일반경쟁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1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행령 제26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¹¹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은 2020년도에 ‘팩트체크 관련 교육 및 사업 실적이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으로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모를 통해 [가]를 팩트체크 사업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2021년도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공모를 하지 않고 [가]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통위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재단은 [가]를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가]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 중 기능 고도화 사업자를 선정하게 하여야 하고, 위 사업을 분리하여 그 중 일부 사업에 대해 [가]가 아닌 제3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F는 2020. 8. 19.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의 소유권을 [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자문 신청 문서를 기안하는 등으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의 소유권이 [가]에 귀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1. 13.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수행주체를 [가]로 명시한 2021년도 팩트체크 사업수행

1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 등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계획서를 기안하여 당초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2021. 2. 1. 같은 팀 선임 J¹¹⁹⁾가 ㉠㉠ 및 ㉠㉡에 각각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사업 및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수행주체가 ㉠㉠에서 ㉠㉡로 변경된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자, 방통위에 사업수행 주체 변경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그대로 결재(전결)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F는 같은 해 2. 5. ㉠㉠ 및 ㉠㉡가 각각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200백만 원) 및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300백만 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한 것에 대해 J가 같은 해 2. 6. ㉠㉠ 및 ㉠㉡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계획을 기안하자, 그대로 중간결제한 후 ㉠본부장 K¹²⁰⁾와 이사장 L¹²¹⁾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해 2. 9. J가 ㉠㉡에 보조금 120백만 원을 교부하는 문서를 기안한 데 대하여 그대로 중간결제한 후 K와 L의 결재를 받아 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또한 F는 ㉠㉠가 같은 해 2. 10.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인력·예산·자산을 (재)㉠㉢에 이관하는 데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J가 같은 해 2. 15. 이관을 승인하는 문서를 기안하자 방통위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그대로 중간결제한 후 K와 L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의 전결로 이관 승인을 통보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2. 16. 방통위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

119) 2021. 12. 31. 퇴직하였음

120) 2023. 4. 30. 퇴직하였음

121) 2021. 2. 16. 퇴직하였음

도화」 사업을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와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세분하고 각각의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를 변경[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가]→(재)[가], 팩트체크 플랫폼 기능 고도화: [가]→[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계획 변경 승인을 사후 요청하여 같은 해 2. 17. 승인을 받았다.

그 결과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수행주체가 플랫폼의 소유권자[가]→(재)[가]도 아닌 [가]로 변경되어, 플랫폼의 소유권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기능 고도화」(300백만 원) 사업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거나 공모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가]가 위 기능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 간접보조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계상 부당 승인

재단은 2021. 2. 5. 및 같은 해 5. 24. 팩트체크 사업 중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의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표 18]과 같이 [가]에 국고보조금 계 400백만 원을 교부하고, 2022. 1. 14. [가]로부터 위 2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2. 25. 방통위에 위 2개 사업 등 팩트체크 사업 전체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18] 2021년 [가]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

(단위: 천 원)

간접보조사업	구분	소계	보수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기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교부액	300,000	270,740	18,800	8,450	1,650	360
	집행액	296,206	270,740	15,909	7,879	1,320	358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교부액	100,000	78,760	8,760	-	12,480	-
	집행액	97,791	78,760	8,542	-	10,489	-
합계	교부액	400,000	349,500	27,560	8,450	14,130	360
	집행액	393,997	349,500	24,451	7,879	11,809	358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¹²²⁾,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22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호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간접보조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급여보다 과다하게 산정

122)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 하에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거나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 단가에 사업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한 후 과다 산정한 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았을 때 인건비가 실제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간접보조금 교부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인건비

재단은 2021. 1. 29. 과로부터 참여인력 인건비를 과가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평균임금과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이하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참여율을 적용하여 [표 19]와 같이 총 270,740천 원으로 산정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수행계획서(총 사업비 300,000천 원)를 제출받았다.

[표 19]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인건비 산출 명세

(단위: 원)

역할	기준월급여 ¹⁾ (A)	참여인원수 (B)	참여기간 (C)	참여율 ²⁾	금액 (D=A×B×C)
IT PM	4,722,173	1	11개월	65%	51,943,870
IT서비스 기획자	3,115,939	1	7개월	40%	21,811,510
응용 SW 개발자	3,710,129	1	11개월	65%	40,811,320
SW 아키텍트	3,724,565	1	11개월	50%	40,970,160
응용 SW 개발자(지원)	2,568,551	1	10개월	45%	25,685,500
UI/UX 디자이너	2,652,952	1	11개월	60%	29,182,450
책임연구원	1,622,940	2	11개월	25%	35,704,460
연구원	2,240,007	1	11개월	45%	24,640,000
소계		9			270,749,270

주: 1. IT PM 등 6명은 SW기술자 평균임금, 책임연구원 등 3명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
 2. 최초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율이며, 과에서는 최초 사업 신청서의 기준 임금 산정의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2021. 7. 12. 재단에 “투입을 산정시 SW노임단가 적용 계산 착오에 따른 2월~6월 투입을 정정 및 변경”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준 임금을 수정하지 않고 참여율만 변경함으로써 인건비 예산 총액을 수정하지는 않음(「참여율 변경 예시」 ‘IT PM’ 65%→54.93%, ‘응용SW 개발자’ 65%→54.93%)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F는 2021. 1. 14. 팩트체크 사업 중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¹²³⁾한 사업수

123) 선임연구원: 4,078천 원 × 11개월 × 2명 = 89,710천 원

행계획서를 기안하여 갑본부장 K의 결재를 받아 방통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 보조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¹²⁴⁾

그리고 F는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갑라가 수행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수행계획서의 참여인력 인건비를 검토하여 참여인력 인건비가 실제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F는 2021. 2. 6. 같은 팀 선임 J로 하여금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계획’을 기안하게 한 후 갑본부장 K와 이사장 L에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사업수행계획서대로 간접보조금이 교부 결정되게 한 후 같은 해 2. 9. 등 총 3회¹²⁵⁾에 걸쳐 갑라에 간접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갑라는 2021. 2. 25.부터 2021. 12. 24.까지 간접보조사업 참여인력 총 18명에게 12차례에 걸쳐 101건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표 20]과 같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 인건비는 140,943,712원인데도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인건비로 270,740,000원을 계상·집행함으로써 차액 129,796,288원¹²⁶⁾ 만큼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124) F는 간접보조금을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였음

125) 2021. 2. 9. 120백만 원, 같은 해 6. 8. 90백만 원, 9. 29. 90백만 원

126) 보조사업 참여율을 초과하는 인건비로서 보조사업에 참여한 대가가 아니므로 갑라에서 지급했어야 함

[표 20] 2021년 오픈 플랫폼 고도화 사업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귀속월	지급일	참여인원수	평균 참여율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인건비 ¹⁾ (A)	정당 인건비 ²⁾ (B)	목적 외 사용액 (C=A-B)
2월	2.25.	9	39.44	25,980,140	12,429,828	13,550,312
3월	3.25.	9	38.06	26,291,180	12,038,254	14,252,926
4월	4.23.	8	37.01	23,151,840	10,895,857	12,255,983
5월	5.25.	8	37.01	23,151,840	10,895,857	12,255,983
6월	6.25.	9	32.21	21,904,540	11,139,158	10,765,382
7월	7.23.	12	35.65	31,772,750	16,775,887	14,996,865
8월	8.25.	12	36.34	30,638,880	18,014,228	12,624,653
9월	9.24., 9.30.	9	34.10	22,117,730	12,881,626	9,236,105
10월	10.25.	8	36.68	21,611,740	11,994,160	9,617,581
11월	11.25.	8	36.03	21,274,030	11,711,522	9,562,509
12월	12.24.	9	36.04	22,845,330	12,167,341	10,677,989
소계		18(중복 제외)		270,740,000	140,943,712	129,796,288

주: 1. [가]가 SW기술자 등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단에 신청·집행한 금액
 2. [가]가 각각의 참여인원에게 지급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로서 정당하게 간접보조금으로 산정·집행하였어야 할 금액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F는 2022. 1. 14. [가]가 인건비로 270,740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다]팀 주임 U로 하여금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문서를 기안하게 하여 K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2. 25. 방통위에 제출하였다.

나.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인건비

재단은 2021. 5. 12. 및 5. 24. [가]로부터 참여인력 인건비를 [가]가 실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참여율을 적용하여 [표 21]과 같이 총 78,768,206원으로 산정한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수행계획서(총 사업비 100,000천 원)를 제출받았다.

[표 21]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 인건비 산출 명세

(단위: 원)

역할	평균임금 ¹⁾ (A)	참여인원수(B)	참여기간(C)	참여율 ²⁾ (D)	금액(E=A×B×C×D)
IT PM	8,596,776	1	7개월	20%	12,035,486
IT서비스 기획자	9,217,987	1	6개월	15%	8,296,188
UI/UX 디자이너	5,232,211	1	6.5개월	32%	10,882,999
UI/UX 개발자	6,312,490	1	6.5개월	29%	11,899,044
응용 SW개발자	6,754,337	1	6개월	36%	14,589,368
시스템 SW개발자	5,288,766	1	6.5개월	35%	12,031,943
IT 테스터	4,342,874	1	6.5개월	32%	9,033,178
소계		7			78,768,206

주: 1. 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20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01호)]

2. 최초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율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F는 위 “가항”과 같이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안한 사실이 있고,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중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참여인력 인건비가 실제 급여가 아니라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F는 같은 해 5. 24. J로 하여금 ‘2021 팩트체크 2차 위탁사업 협약 체결 계획보고’ 문서를 기안하게 한 후 K 및 이사장 D에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같은 날 사업수행계획서대로 간접보조금이 교부 결정되게 한 후 2021. 6. 2. 등 총 4회¹²⁷⁾에 걸쳐 ㉠에 간접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은 같은 해 6. 26.부터 12. 24.까지 간접보조사업 참여인력 총 11명에게 8차례에 걸쳐 총 48건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표 22]와 같이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 인건비는 48,786,678원인데도 SW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127) 2021. 6. 2. 30백만 원, 같은 해 8. 30. 40백만 원, 11. 22. 12백만 원, 12. 8. 18백만 원

적용하여 인건비로 78,759,994원을 계상·집행함으로써 차액 29,973,318원¹²⁸⁾ 만큼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표 22] 2021년 모바일 앱 개발 사업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귀속월	지급일	참여 인원수	평균 참여율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인건비 ¹⁾ (A)	정당 인건비 ²⁾ (B)	목적 외 사용액 (C=A-B)
6월	6.26.	6	27.33	10,033,130	7,013,178	3,019,952
7월	7.23.	7	28.00	12,032,864	8,467,660	3,565,204
8월	8.25,9.2.	7	28.71	12,294,230	8,462,503	3,831,727
9월	9.24.	7	25.99	11,321,500	6,720,029	4,601,471
10월	10.25.	8	25.19	12,711,250	6,911,262	5,799,989
11월	11.25.	8	23.88	12,166,310	6,556,870	5,609,441
12월	12.24.	5	25.80	8,200,710	4,655,176	3,545,534
소계		11(중복 제외)		78,759,994	48,786,678	29,973,318

주: 1. [가]가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단에 신청·집행한 금액
 2. [가]가 각각의 참여인원에게 지급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급여로서 정당하게 간접보조금으로 산정·집행 하였어야 할 금액
 자료: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F는 2022. 1. 14. [가]가 인건비로 78,759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같은 팀 직원 U로 하여금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문서를 기안하게 하여 중간결제한 후 K의 결제를 받아 같은 해 2. 25. 방통위에 제출하였다.

3. 팩트체크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재단은 2021. 1. 14. 방통위로부터 일반용역비로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 개발」(383,720천 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용의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민간경상보조, 1,495백만 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재단은 같은 해 4. 19. 방통위에 「실시간 이슈 발굴 시스템 개발」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100백만 원) 사업비의 비

128) 보조사업 참여율을 초과하는 인건비로서 보조사업에 참여한 대가가 아니므로 [가]에서 지급했어야 함

목 변경(일반용역비→민간경상보조)을 신청하여 같은 날 승인 받았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4. 28.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첨부 "제안요청서")'으로 명시하여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위탁사업 공모를 한 후 같은 해 5. 18.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가라**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320-01)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320-07)는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 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예)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과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공고문과 같이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에 보고하여 보조금 예산 세목 조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F는 같은 해 5월(날짜 모름) 「팩트체크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 협약

서」 작성 과정에서 같은 팀 선임 J¹²⁹⁾로부터 팩트체크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 귀속 주체를 어느 기관으로 할지 문의를 받고, ㉠본부장 K에게는 당초 위 공모 공고에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인 프로그램 등 산출물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아니 한 채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20. 9. 8.)¹³⁰⁾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이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F는 K로부터 ‘모바일 앱은 회원관리나 데이터 등 모든 정보가 플랫폼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에 모바일 앱의 소유권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¹³¹⁾을 듣고, J로 하여금 같은 해 5. 24.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을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지도 아니 한 (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위탁사업 협약서 체결(안)을 기안하게 하여 자신이 확인한 후 K의 검토 및 이사장 D의 결재를 받았다.¹³²⁾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6. 2. 등 4회에 걸쳐 ㉡에 간접보조금 100백만 원을 교부하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을 개발한 결과,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에 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F는 위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문에 소유권 등에 대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업수행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재단에 채용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

129) 2021. 12. 31. 퇴직하였음

130)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으로 개발한 플랫폼의 소유권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 어느 쪽으로도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나-1)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참조

131) 해당 내용은 F의 진술 내용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재단 직원 등을 통해 퇴직한 K ㉠본부장에게 몇 차례 전화 연락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K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132) 이 과정에서 재단이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에 귀속시키는 협약서(안)에 대해 방통위에 검토 또는 승인을 요청하거나, 방통위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함

은 담당자 J가 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공고문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는 팀장으로서 2021. 4. 27. 공고문이 포함된 위탁사업 공모 계획을 검토하여 중간 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위탁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J가 소유권 귀속 주체에 대해 문의했을 때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F의 행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정」 제30조(준수의무) 제1호(법령 준수 및 성실하게 직무 완수)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2조(징계) 제1항 제1호(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 **가라**를 「2021년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간접보조사업 수행주체로 부당하게 선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가라**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수행계획서를 부당하게 승인하였으며,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가라**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업무를 주관한 F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방송통신위원회

문 책 요 구

제 목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 승인
기 관 명 시청자미디어재단
내 용

1. 사건 개요

재단 [인]센터장 E¹³³)는 2019. 1. 1.부터 2021. 6. 6.까지 재단 [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 10. 28. 등 [개]가¹³⁴)로부터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 간접보조금에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콘텐츠 관리운영 용역비 30,000천 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변경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1. 6.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133) E는 2022. 7월경 V에서 E로 개명하였음(이하 E로 호칭함)

134) [개]가는 [개]단, [개]단, [개]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재단은 내역사업 간 보조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통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한 후 변경된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다른 내역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2020. 3. 6. 방통위로부터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내역사업)¹³⁵⁾ 보조금 330백만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내역사업)¹³⁶⁾ 보조금 150백만 원 등 팩트체크 사업(세부사업) 보조금 계 610백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재단은 공모를 거쳐 같은 해 4. 28. 를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중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0백만 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내역 사업 중 일부(사업명 동일, 114백만 원)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같은 날 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재단은 같은 해 10. 28. 및 같은 해 11. 6. 로부터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비에서 팩트체크 플랫폼 콘텐츠 관리운영 용역비 30,000천 원을 마련하여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변경[일반수

135)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및 팩트체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136) 예비 팩트체커가 전문 팩트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

용비 14,520천 원 감액, 임차료 15,000천 원 감액, 일반용역비(플랫폼 콘텐츠 관리운영 용역비) 30,000천 원 증액] 신청을 받았다.

위 협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의 보조금으로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한 후 같은 해 12. 31.까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¹³⁷⁾,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과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은 서로 다른 내역사업이다.¹³⁸⁾

따라서 재단은 방통위가 내역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 ㉠부장 E는 같은 해 11. 6. 담당자 주임 W¹³⁹⁾가 ㉠㉠가 신청한 대로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한 데 대하여, 방통위에 내역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변경을 신청하거나 ㉠㉠의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전결)하여 승인하였다.

그 결과 ㉠㉠는 같은 해 11. 9. ㉠㉠와 팩트체크 플랫폼 콘텐츠 운영 등 「㉠¹⁴⁰⁾ 운영」(기간: 2020. 11. 9.~12. 31.) 계약(금액: 30,000천 원)을 체결하고, 같은

137) ㉠㉠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0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같은 해 11월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한 후 서비스에 돌입하여 같은 해 12월까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38)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에 따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을 기획 및 개발’하고 ‘플랫폼 서비스 개시 후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및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사업은 ‘예비 팩트체커 양성 및 전문 팩트체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39) W는 2020. 5. 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1. 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음

140) 2020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따라 개발된 플랫폼 명칭으로 2021. 1. 26. 설립된 (재)㉠㉠와는 구별됨

해 11. 18. 및 11. 20.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보조금에서 계약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내역사업의 보조금을 다른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은 같은 해 12. 15. 재단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내역사업의 추진 실적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관리 등 ㉡을 운영’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 1. 15. 재단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 마련」 보조금에서 ‘㉡ 운영·관리’를 위한 용역비 30,000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단은 2021. 2. 26. 방통위에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보조금(99,535,450원)과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내역사업 보조금(113,431,361원)을 각각 해당 내역사업의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E의 행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정」 제30조(준수의무) 제1호(법령 준수 및 성실하게 직무 완수)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2조(징계) 제1항 제1호(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로 하여금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보조금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E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